

가상자산 및 디파이애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현황

2022. 12.

강동익 · 홍성희 · 박수진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 동 익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 성 희 공인회계사

박 수 진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7
II. 가상자산과 디파이의 개요	10
1. 가상자산의 개요	10
가. 가상자산의 정의 및 분류	10
나. 가상자산의 합의방식	13
2. 디파이(탈중앙화금융)의 개요	15
가. 디파이의 정의 및 개념	15
나. 주요 디파이 거래유형	17
III. 가상자산 관련 국제 논의현황	23
1. OECD	23
가. 가상자산과세: 회원국의 과세제도와 새로운 조세정책 이슈	23
나. 가상자산의 조세목적상 보고체계	29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32
가. 암호자산 관련 EU 법적 프레임워크	32
나. 조세분야 행정협력 지침 개정안(DAC8)	37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과세제도	40
1. 한국	40
가. 가상자산 분류와 회계처리	40
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43
다. 단계별 과세제도	44

2. 미국	48
가. 가상자산의 분류와 회계처리	48
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51
다. 단계별 과세제도	53
3. 일본	66
가. 가상자산 분류와 회계처리	66
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69
다. 단계별 과세규정	70
4. 영국	77
가. 가상자산 분류와 회계처리	77
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80
다. 단계별 과세규정	81
V. 국제비교와 시사점	95
1. 국제비교	95
가. 국제 동향	95
나. 가상자산의 분류와 회계처리	96
다.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100
라. 단계별 과세제도	102
2. 시사점	111
가. 가상자산 취득시점 과세규정의 명확화	111
나. 가상자산 대여 시 과세방법의 명확화	113
다.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의 과세구분	116
라.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도입	118
마.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상자산	119
VI. 결론	122
참고문헌	124

표 목차

〈표 II-1〉 가상자산의 기능에 따른 분류	12
〈표 V-1〉 주요국의 가상자산 분류(근거 법률)	98
〈표 V-2〉 주요국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99
〈표 V-3〉 주요국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처리	101
〈표 V-4〉 주요국의 가상자산 취득단계 소득세 과세	104
〈표 V-5〉 주요국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소득세(자본이득세) 과세	106
〈표 V-6〉 주요국의 가상자산 처분 과세(사업목적 없는 경우)	109
〈표 V-7〉 주요국의 가상자산 처분 과세(면세점)	110

I. 서론

-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사회경제 각 분야에 대한 가상자산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에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¹⁾ 논란이 있을 만큼 전 사회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았음
 - 2017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열풍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반작용,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 및 신규 고수익 투자처로 인식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음²⁾

- 정부는 2016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를 개시한 이후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규제 측면에서 먼저 관련 제도 정비를 착수하고, 조세법 측면에서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음
 - 2020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금세탁 규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예정임

-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가차익투자 대상으로만 이용하던 가상자산이 최근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관련 과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1)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와 비교하여 높은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암호 자산에 대한 국내의 높은 수요와 차익거래의 어려운 점에 기인하여 발생한 현상을 말함(해시넷, 「김치프리미엄」, http://wiki.hash.kr/index.php/%EA%B9%80%EC%B9%98_%ED%94%84%EB%A6%AC%EB%AF%B8%EC%97%84, 검색일자: 2023. 2. 7.)

2) 관계기관 합동(2017), p. 1

- 도입 초반 가상자산은 주로 지급결제 및 시가차익 투자대상으로만 활용되어 재화 및 서비스와의 교환단계, 투자자의 양도단계에 대한 규제 및 과세문제에 관련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음
-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됨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사건(예: 하드포크, 에어드랍) 및 이를 활용한 유사금융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코인게코(CoinGecko)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 시가총액 약 25억달러에 불과하던 전 세계 디파이 시가총액은 2021년 1월 약 200억달러, 2021년 12월 약 1,500억달러에 이를 만큼 디파이 시장이 급성장하였음³⁾
 - 이후 2022년 중 주요 가상자산인 테라의 붕괴, 대표적 가상자산거래소인 FTX의 파산 등으로 전년 대비 거래 시가총액이 급감하여 2022년 말 기준 약 340억 달러임⁴⁾
 - 디파이 거래규모 및 사회적 관심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대표적 디파이 유형인 가상자산의 대여, 유동성 공급 등의 세무처리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가상자산과 디파이에 대한 개요 및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본 후 본격적인 가상자산소득과세의 시행에 앞서 참고해야 할 사항을 검토함
-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며 대부분 나라의 과세지침이 다루고 있는 교환 토큰(exchange token)과 이를 활용한 디파이와 관련된 개인 투자자의 소득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함⁵⁾

3) 코인게코, "Global Cryptocurrency Market Cap Charts," <https://www.coingecko.com/en/global-charts>, 검색일자: 2023. 2. 10.

4) CoinGecko(2023), p. 24

5) 유틸리티 토큰이나 증권형 토큰은 기술중립적 접근으로 해당 토큰의 성격에 맞는 기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감안하여 보다 유의성이 있는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측면의 문제에 대해 검토함

- 본 보고서는 제I장 서론과 제VI장 결론을 포함하여 가상자산⁶⁾과 디파이의 개요, 주요 국제기구의 가상자산 논의동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과세제도 및 국제비교와 시사점 등 총 6장으로 구성함
- 제II장에서는 가상자산과 디파이의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해 개관함
- 제III장에서는 OECD와 EU의 가상자산 관련 최근의 논의현황을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상자산 및 디파이의 과세제도에 대해서 기술함
 - 조사대상국으로는 가상자산 및 디파이 시장의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가상자산 및 디파이에 대한 구체적 과세지침을 발표한 영국 및 우리와 유사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을 선정함
-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주요국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6) 가상자산을 지칭하는 용어는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암호자산(crypto asset),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가상자산(virtual asset), 코인, 토큰 등 매우 다양함. 우리나라는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이후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EU와 영국은 암호자산(crypto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스위스는 코인 또는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한국은행, 2022, p. 17).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코인, 토큰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II. 가상자산과 디파이의 개요

1. 가상자산의 개요

가. 가상자산의 정의 및 분류

-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분산원장기술(즉 블록체인)과 암호화기술에 입각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지는 않음⁷⁾
-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암호자산(crypto-asset)이란 거래를 검증하고 보증하기 위해 암호화된 보안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존하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정의함⁸⁾
- 유럽연합(이하 “EU”)은 암호자산이란 분산원장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해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또는 저장되는 가치 또는 권리를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함⁹⁾
- 국제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는 암호자산이란 암호화와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존하는 사적 디지털자산의 일종으로 정의함¹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이전,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표현인 것으로 정의함¹¹⁾

7) OECD(2020), p. 10

8) CARF, Section IV. A-1

9) MiCA §3.1(2)

10) FSB, *Assessment of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from Crypto-assets*, 2022, p. 25

- 가상자산은 기능에 따라 교환형, 유틸리티형 및 증권형(또는 투자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대해 개관함¹²⁾
 - 영국의 암호자산 특별대책반¹³⁾은 2018년 10월 암호자산을 기능에 따라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으로 공식적으로 유형화한 내용을 발표함¹⁴⁾
 - OECD, 유럽의회, FSB,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등 국제기구 또한 영국과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음
 - OECD는 암호자산을 교환 토큰(즉 가상화폐), 증권형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함¹⁵⁾
 - 유럽의회는 암호자산은 크게 교환 토큰, 투자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함¹⁶⁾
 - FSB는 암호자산은 기능에 따라 지급수단의 성격을 갖는 비보증암호자산,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NFT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함¹⁷⁾
 - IMF는 암호자산을 비보증암호자산(교환 토큰을 말함),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¹⁸⁾으로 분류함¹⁹⁾

- (교환 토큰_Exchange token) 이전 가능하며 주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토큰으로 결제토큰(payment token), 가상화폐,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라고도 불림

11) FATF(2022), p. 132

12) 김갑래(2021), pp. 3~6; 한국은행(2022), pp. 14~15; FCA(2019), p. 4

13) 영국 재무부(HM Treasury), 금융감독원(FCA),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참여함

14) 김재진·최인석(2022), pp. 169~171

15) OECD(2020), p. 12

16)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Train 10,” 2022, <https://www.europarl.europa.eu/legislative-train/carriage/crypto-assets-1/report?sid=6301>, 검색일자: 2023. 1. 19.

17) FSB(2022), p. 3

18)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안정시키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예로는 미국 달러화에 기초한 US테더 등이 있음

19) Bains et al.(2022), pp. 11~12

- 전통적인 법정화폐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되도록 설계된 토큰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음
 - 대부분 탈중앙화되어 운영되지만 중앙에서 발행되고 통제되는 토큰도 있음
 - 재화나 용역의 교환수단,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지급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적으로 지급결제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등이 적용됨
- (유틸리티 토큰_Utility token) 토큰 보유자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토큰을 말함
- 토큰 보유자에게 특정 용역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선급금 또는 상품권과 같은 역할을 함
 - 일반적으로 단일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지만 발행자와 연계된 특정 네트워크로 사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토큰화된 상품카드, 특정 게임토큰 등이 이에 해당됨
 - 순수 유틸리티 토큰은 자금세탁방지규제 및 증권규제 등의 적용대상이 아님
- (증권 토큰_Security token) 일반적으로 소지자에게 전통적인 증권과 같은 권리를 제공하는 토큰을 말하며 자산토큰, 투자토큰으로도 불림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서 관할 법령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며 관할국별로 정의가 다양함
 - 전통적인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임

〈표 II-1〉 가상자산의 기능에 따른 분류

구분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운영됨 • 교환수단으로 설계됨 • 토큰소유자에게 제한적 권리가 유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발행됨 • 토큰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부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발행됨 • 개별 관할국의 증권의 정의를 충족함

자료: 본문 및 IMF, Bains et al.(2022), p. 12, 그림 1을 참고하여 작성함

나. 가상자산의 합의방식

- 가상자산은 다수의 참가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되어 거래를 처리하는 탈중앙화를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데,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처리기록을 갖기 위해서는 합의절차가 필요함²⁰⁾
 - 가상자산은 분산원장기술에 의존하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다수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분산원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의절차가 필요함
 - 즉 합의절차를 통해 분산화된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의 개입 없이도 거래의 유효성과 불변성을 갖게 됨

- 분산원장기술의 합의방식²¹⁾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작업 증명(Proof of Work, PoW)과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이 있음^{22), 23)}

- 작업증명은 참가자가 복잡한 연산문제를 수행하여 해당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합의방식을 말함²⁴⁾
 - 거래가 확인되고 분산원장에 추가되는 절차를 채굴이라 하며, 작업이란 채굴까지 이르는 연산과정을 말함
 - 채굴자²⁵⁾는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신규 토큰 및 거래수수료를 수취함
 - 작업증명방식은 참여자 중 채굴자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음

20) 임종철 외(2018), p. 47

21) 분산된 네트워크상에서 합의, 신뢰 및 보안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말함(인베스트피아(Investopedia), "What Are Consensus Mechanisms in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onsensus-mechanism-cryptocurrency.asp>, 검색일자: 2023. 1. 3.)

22) OECD(2020), p. 11

23) 해시넷, 「합의 알고리즘」, http://wiki.hash.kr/index.php/%ED%95%A9%EC%9D%98_%EC%95%8C%EA%B3%A0%EB%A6%AC%EC%A6%98, 검색일자: 2023. 1. 3.

24) OECD(2020), p. 11; p. 13

25) 연산문제를 최초로 풀어 필요한 컴퓨터 프로세스를 수행한 자를 말함

-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모네로 등은 작업증명방식을 채택함
- 지분증명은 사용자가 블록체인상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검증권한을 할당 받는 방식으로 채굴과정이 불필요함²⁶⁾, ²⁷⁾, ²⁸⁾
 - 검증자는 거래 검증 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분을 일정 기간 고정 예치(이하 ‘예치 또는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받음
 - 일반적으로 검증자는 예치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확률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며 보상은 예치 지분규모와 예치기간에 비례함
 - 일부 스테이킹 활동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며 검증자가 컴퓨터를 오프라인하거나 나쁜 거래를 승인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 예치된 지분을 잃을 수도 있음²⁹⁾
 - 지분증명은 채굴이 불필요하므로 전력소비를 줄이며 거래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큰 보유량에 따라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블록체인 지향적인 평등과 배치된다는 단점도 있음
 - 큐텀, 피어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테조스 등이 지분증명방식을 채택함
 - 이더리움은 과거 작업증명방식을 채택하였으나 2022년 중 지분증명방식으로 전환함

26) OECD(2020), p. 11

27) 해시넷, 「합의 알고리즘」, http://wiki.hash.kr/index.php/%ED%95%A9%EC%9D%98_%EC%95%8C%EA%B3%A0%EB%A6%AC%EC%A6%98, 검색일자: 2023. 1. 3.

28) Avi-Yonah and Slaimi(2022), p. 27

29) 일종의 페널티로 슬래싱(slashing)이라 함. 작업증명방식의 경우 잘못된 거래를 승인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채굴을 위한 물적자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지만, 지분증명방식은 오류 발생 시 검증자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적으로 페널티의 설계가 필요함(Ritter and Tompkins, 2022, p. 26)

2. 디파이(탈중앙화금융)의 개요

가. 디파이의 정의 및 개념

-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또는 “디파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정의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30), 31)}
 - 디파이의 사전적 정의는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이지만 구체적으로 디파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반적으로 전통적 금융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던 금융시스템을 중앙관리시스템 없이 공개적인 스마트계약³²⁾에 의한 가상자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과 유사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됨
 - OECD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최신 트렌드로 전통적 금융체계 내의 다양한 활동을 공개적이고 분산되어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봄³³⁾
 - 디파이는 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이하 “IOSCO”)는 전통적인 중개기관 또는 중앙집중식 기관 없이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는 금융상품, 서비스, 약정 및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봄³⁴⁾
 - FSB는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통해 구축된 스마트계약과 암호자산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대체금융시장, 제품 및 시스템으로 정의함³⁵⁾
 - 이준호 외 5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계약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로 봄³⁶⁾

30) IOSCO(2022), p. 1

31) OECD(2022a), p. 18

32) 미리 결정된 프로토콜을 통해 자동적으로 거래가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함

33) OECD(2022a), p. 16

34) IOSCO(2022), p. 1

35) FSB(2022), p. 25

36) 이준호 외(2021), p. 28

- 디파이는 2017년 메이커다오(MakerDAO)가 중앙집중식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대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대출 플랫폼인 컴파운드(Compound), 탈중앙화거래소인 유니스왑(Uniswap)의 등장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³⁷⁾
 - 가상자산의 대여, 탈중앙화거래소, 파생상품, 보험, 복권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음

- 디파이의 주요 특징으로는 중앙관리기관의 부재, 커뮤니티에 의한 자율 운영, 보편적 접근, 조합성이 언급됨^{38), 39)}
 - (중앙관리기관의 부재) 중앙화된 기구 또는 중개기관에 대한 수탁 없이 참여자가 자신의 개인키를 관리함
 - (자율 운영)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토콜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며 네트워크 참여자가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됨
 - (보편적 접근) 전통적 금융에서는 고객을 선별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과는 달리, 사용자, 개발자, 검증자 등 모든 측면에 있어 자유로운 참여가 허용됨
 - (조합성) 디파이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예: 디지털자산, 스마트계약, 프로토콜 등)는 자유롭게 결합, 융합되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는 디파이 생태계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됨
 - 조합성 측면에 의해 디파이를 일명 머니레고(money lego)라고도 함⁴⁰⁾

-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지만 탈중앙화 방법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으며 탈중앙화 정도에 있어서도 프로토콜별로 차이가 있음⁴¹⁾

37)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What Is Decentralized Finance?: A Deep Dive by The Defiant," <https://coinmarketcap.com/alexandria/article/what-is-decentralized-finance>, 검색일자: 2023. 2. 8.

38) OECD(2022a), p. 18

39) Roukny(2022), p. 14

40) 코인게코(2022a), p. 10

41) IOSCO(2022), p. 9; 코인게코(2022a), p. 12; OECD(2022a), pp. 19~21

- 탈중앙화 여부는 본질적으로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며 측정이 어렵고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음
 - 디파이 시장의 개발단계인 현재 탈중앙화 정도는 프로토콜마다 다르지만 초기 생성단계에서는 중앙화되어 있으나 점차 탈중앙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완벽한 의미의 탈중앙화된 서비스는 없으며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토콜은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중앙집중화되어 있어 탈중앙화와 중앙화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디파이와 함께 언급되는 개념으로 씨파이(Central Finance, CeFi)가 있는데 씨파이와 디파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관리기관의 유무임
- 씨파이 또한 디파이와 같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전통적 금융체계 내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지만 P2P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⁴²⁾
 - 씨파이의 대표적 예로는 중앙화거래소(Central Exchange, CEX)가 있으며, 당초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매매 중개업무만을 하였으나 디파이의 출현 이후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과 유사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은 가상자산의 매매 중개 이외 예치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예: 바이낸스)에서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⁴³⁾

나. 주요 디파이 거래유형

- 디파이 서비스는 이론상 전통 금융체계 내에 제공된 모든 서비스를 포섭할 수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거래는 위임 스테이킹, 탈중앙화거래소, 대여(Lending)에 집중되고 있음

42) 바이낸스(Binance), "A Beginner's Guide to Decentralized Finance (DeFi)," <https://academy.binance.com/en/articles/the-complete-beginners-guide-to-decentralized-finance-defi>, 검색일자: 2023. 1. 13.

43) 이준호 외(2021), pp. 32~33

- 그 외 파생상품, 보험, 오라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1) 위임 스테이킹

- 이론상 지분증명방식하에서는 막대한 물리적 자원을 구축하지 않고도 누구나 지분을 예치하고 블록체인의 검증을 수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지분증명방식에서는 연산 작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연산을 위한 막대한 컴퓨터 장비의 구축이 불필요하여 검증자로 참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
- 그러나 관련 기술, 노하우 및 직접 스테이킹에 대한 열의 등이 부족한 다수의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스테이킹하지 않고 스테이킹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 스테이킹’ 방식을 선택함⁴⁴⁾, ⁴⁵⁾
 - 블록체인은 거래 처리속도 향상을 위해 검증자 지원 조건으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실무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직접 스테이킹 대신 실제 유효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3자에게 자신의 가상자산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함⁴⁶⁾
 - 검증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구사항, 최소 참여지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 검증자는 위임된 스테이킹 권한을 사용하여 지분검증을 수행하고 합의된 비율(일반적으로 5~10%, 때로는 최대 25%)에 따라 스테이킹 보상을 분할받음
 - 프로토콜 및 검증자에 따라 위임구조가 상이할 수 있으나 위임 시 검증인에게 수탁자의 개인키에 대한 접근권한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참여자의 개인키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자인 검증자의 행동으로 위임된 가상자산이 슬래싱되는 경우에는 참여자의 스테이킹된 가상자산 역시 프로토콜에 의해 감소될 수 있음⁴⁷⁾

44) Ritter and Tompkins(2022), p. 27

45) NYSBA(2022), p. 44

46) Parsons(2022), p. 8

- 위임 스테이킹은 위임자가 검증자를 직접 선택하여 위임하는 방식, 중앙화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유동화 스테이킹을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됨
 - 유동화 스테이킹 방식의 경우 위임자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토큰을 예치하고 담보토큰을 받음. 위임자는 담보토큰을 자유로이 양도하거나 기간 종료 후 플랫폼에 제시하여 스테이킹한 가상자산과 보상을 인출할 수 있음

2) 탈중앙화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DEX)

- 탈중앙화거래소는 디파이 생태계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언급되는데, 기존 중앙화거래소(CEX)와는 달리 거래에 대해 책임지는 제3자 없이 스마트계약에 의하여 비인격적으로 거래되는 곳을 말함⁴⁸⁾
 - 탈중앙화거래소는 스마트계약과 온체인거래를 통해 운영되어 별도의 중개자 없이 P2P 방식으로 운영됨
 - 대표적인 탈중앙화거래소로는 유니스왑, 커브, 팬케이크 스왑, 스시스왑, 우리나라의 클레이스왑 등이 있음⁴⁹⁾
- 중앙화거래소와 비교할 때 탈중앙화거래소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개인키를 계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임⁵⁰⁾
 - 사용자가 중앙화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입금하면 개인키를 통제할 수 없어 교환소의 해킹 및 도난 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탈중앙화거래소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계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 탈중앙화거래소는 운영방식에 따라 중앙화거래소와 유사한 오더북 기반 또는 유동성풀 기반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탈중앙화거래소는 유동성풀 방식으로 운영됨⁵¹⁾

47) NYSBA(2022), p. 44

48) Cong et al.(2022); 이준호 외(2021), p. 50

49) 코인게코, "Top Decentralized Exchanges Ranked by 24H Trading Volume," <https://www.coingecko.com/en/exchanges/decentralized>, 검색일자: 2023. 1. 13.

50) Cong et al.(2022); OECD(2022a), p. 36

51) 코인게코(2022b), pp. 28~29

- (오더북 기반) 중앙화거래소 또는 주식 매매와 유사하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문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표적 거래소로는 디와이디엑스가 있음
 - 사용자가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예치 후 오더북에 주문하고 교환하는 방식임
 - (유동성풀 기반) 유동성풀⁵²⁾과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Automated Market Maker, AMM)⁵³⁾에 의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대표적 거래소로는 유니스왑, 커브 등이 있음⁵⁴⁾
 - 예로 유니스왑에서 가상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갑에서 유니스왑 스마트계약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별도의 예치, 오더북 주문 없이 교환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음
 - 사용자들이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공급하고 해당 풀에서 가상자산의 교환을 원하는 자들끼리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환가격은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에 의해 알고리즘으로 결정됨
- 탈중앙화거래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므로 유동성풀 방식의 탈중앙화거래소는 이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에게 보상을 지급함^{55), 56)}
- 탈중앙화거래소는 자산을 예치하는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에게 유동성풀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교환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분배함
 - 유동성 공급자가 가상자산을 특정 풀에 공급하면 소유한 풀에 대한 지분인 LP토큰(예: 유니스왑은 UNI)을 제공하고 추후 유동성 공급자가 자산을 회수할 때 소각함. 사용자는 LP토큰을 자유로이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거나 프로토콜에 예치할 수 있음

52) 스마트계약상에 존재하는 가상자산 보유고임

53) 수학적 공식에 의하여 자산 가격을 책정하는 DEX 프로토콜을 말함(바이낸스, "https://academy.binance.com/en/articles/what-is-an-automated-market-maker-amm," 검색일자: 2023. 2. 6.)

54) 업비트, 「유니스왑은 어떻게 작동할까?」, https://m.upbitcare.com/academy/education/blockchain/50, 검색일자: 2023. 1. 13.

55) 코인게코(2022b), p. 13

56) 바이낸스, "What Are Liquidity Pool (LP) Tokens?," https://academy.binance.com/en/articles/what-are-liquidity-pool-lp-tokens, 검색일자: 2023. 1. 13.

3) 대여(Lending)

- 대여는 디파이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대여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률의 보상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짐⁵⁷⁾
 - 대여자는 대여 프로토콜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을 빌려주며 증표 형식의 신규 토큰을 받고, 차입자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대여 프로토콜에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을 차입함
 - 예를 들어 대출 프로토콜인 아베에 자산을 예치하는 경우 증표로 aToken을 지급받음
 - 대여 프로토콜은 차입자의 신용도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차입자에게 대출자산과는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요구함
 - 대여수수료는 프로토콜마다 다양하며 알고리즘, 프로토콜 프로젝트 팀 또는 특정 거버넌스 투표 등을 통해 설정되는데, 디파이 프로토콜의 익명성으로 인해 차입자의 신용이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 대표적인 대여 플랫폼으로는 컴파운드, 아베 등이 있으며, 국내 중앙화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등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 참고로 일명 이자농사(Yield Farming)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탈중앙화 거래소 및 대여플랫폼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됨⁵⁸⁾
 - 이자농사는 디파이 세계에서 가상자산의 유동성을 공급한 자에게 가상자산을 대가로 제공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⁵⁹⁾으로 탈중앙화거래소에 대한 유동성풀 공급

57) OECD(2022a), p. 27; IOSCO(2022), p. 11; 바이낸스, <https://academy.binance.com/en/articles/what-is-crypto-lending-and-how-does-it-work>, 2023. 1. 13.

58) 바이낸스, "What Is Yield Farming in Decentralized Finance (DeFi)?," <https://academy.binance.com/en/articles/what-is-yield-farming-in-decentralized-finance-defi>, 검색일자: 2023. 1. 13.

59) Harvey, Campbell R., Ashwin Ramachandran, and Joey Santoro(송교직·안성필·이동엽 역), 『디파이와 금융의 미래』, 2022, p. 57

- 및 대여플랫폼에 대한 자산예치 등으로 받는 수수료가 이에 해당됨
- 자산의 예치대가는 예치 시 제공받은 신규 토큰에 내재화되는 경우와 예치 시 제공받은 신규 토큰과는 별도로 제공자의 계정에 주기적으로 계상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⁶⁰⁾ 각각의 프로토콜마다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최근에는 최적의 수익률을 찾아주는 이자농사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서비스도 출현함⁶¹⁾

60) Schwartz and Jason(2022), pp. 778~780

61) 코인게코(2022b), p. 177

Ⅲ. 가상자산 관련 국제 논의현황

1. OECD

- OECD는 2020년과 2022년 중 각국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가상자산과 관련된 조세보고체계의 구축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2020년 10월 가상자산 관련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과세동향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2022년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조세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체계 최종안을 발표함
 - G20의 요청에 의하여 급증하는 가상자산 사용에 대응하는 조세신고체계(안)을 발표함

가. 가상자산과세: 회원국의 과세제도와 새로운 조세정책 이슈

- OECD는 가상자산 중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교환 토큰⁶²⁾에 대한 각국의 과세처리 현황에 대해 조사함
 - 가상자산은 크게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 가능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교환 토큰의 과세처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함
 - OECD는 2018년 후반과 2020년 초반에 5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가상자산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 현황을 조사함⁶³⁾

62) 해당 보고서에서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지칭함

63) 이하에서는 이 중 소득과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기술함

- 이하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득세 과세현황 및 고려하여야 할 정책이슈 등에 대해 정리함

1) 소득과세 현황

- 소득세 목적상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자산을 자산(property)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으나 세부분류에 있어서는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않음⁶⁴⁾
 -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닌 자산의 한 종류로 인식함
 - 다만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가들 간에도 해당 자산의 세부성격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임
 -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은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반면, 일본 등은 금융자산으로, 캐나다와 중국 등은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함
 - 미국은 자산으로는 인식하나 세부적으로 어느 유형의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음

- (채굴된 가상자산의 과세시기)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자산의 채굴시점에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추후 처분시점에 과세하는 국가도 상당수 있음⁶⁵⁾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신규 토큰을 수령한 시점에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함
 - 가상자산의 수령시점에 기타소득,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해당 범주 내의 일반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프랑스, 폴란드 등과 같이 채굴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토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국가도 존재함
 - 채굴소득을 처분시점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게 되며, 상당수의 국가는 자본이득에 대해 좀 더 조세상 유리한 대우를 하므로 부분면제 또는 저율과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음

64) OECD(2020), pp. 22~23

65) OECD(2020), pp. 23~26

- (과세대상 처분의 범위) 가상자산의 처분은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의 교환, 가상자산 간의 교환,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의 지급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세 가지 경우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세 가지 경우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
 - 반면 프랑스, 폴란드 등은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 간의 교환은 법정통화로 가치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또는 가상자산 거래 장려 목적으로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2) 소득과세 관련 정책이슈

- (가치 평가의 문제)⁶⁶⁾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높고 거래기록의 보관이 용이치 않으며 교환플랫폼별로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여 과세목적상 가치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가치평가의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각국의 관련 지침에는 제한적 사항만이 담겨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납세자에게 가치 평가에 대한 제한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모습도 보임
 - 아일랜드는 가상자산은 단일의 교환가격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납세자는 적절한 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납세자에게 일정 부분의 재량권을 부여함
 - 각국은 가상자산 가치평가의 실무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납세자에게 기록 보관 및 제출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세무신고의 간소화와 신고준수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환플랫폼에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66) OECD(2020), pp. 41~42

- (하드포크⁶⁷)의 과세방법⁶⁸) 가상자산의 하드포크로 인해 기존 토큰 보유자가 신규 토큰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문제가 발생함
 - 하드포크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이외에 새로운 가상자산을 추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⁶⁹)
 - 하드포크를 통해 기존 분산원장에 있는 가상자산 외에 새로운 분산원장에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성될 수 있음
 - 하드포크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세무처리 방식도 국가별로 상이함
 - 대부분의 국가는 수취시점에 비과세하고 처분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반면 미국은 하드포크로 인한 신규 토큰의 수취시점에 과세함
 - 하드포크로 인한 신규 토큰의 수취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처분시점에 과세하는 방법보다 실무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함
 - 미국과 같이 신규 토큰 수취시점에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만일 신규 토큰 발행 후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하에서는 자본손실에 대한 세무상 공제가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무처리)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가상자산과는 세무상 분류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시될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또는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권 또는 외환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없으며 매우 제한적인 국가의 지침만 확인되고 이들 지침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가상자산과 동일한

67) 하드포크는 블록체인의 문제 해결 및 업그레이드 방식의 하나로 문제 해결을 통해 기존 블록체인과는 전혀 다른 프로토콜을 가지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추가로 발생시킴(해시넷, 「하드포크」, <http://wiki.hash.kr/index.php/%ED%95%98%EB%93%9C%ED%8F%AC%ED%81%AC>, 검색일자: 2022. 12. 20.)

68) OECD(2020), pp. 43~45

69) 일반적으로는 하드포크 후 기존 토큰 보유자는 신규 토큰을 수령하지만 모든 하드포크에서 신규 토큰이 배부되는 것은 아님(Rev. Rul. 2019-24, p. 3)

방식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음

- 현재 확인되는 지침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의 양도 시 다른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자본소득세가 발생됨
- 다만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세무목적상 외화 또는 증권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음

□ (디파이에 대한 대응)⁷⁰⁾ 디파이 서비스의 급증현상 대비 관련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지침을 두고 있는 국가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의견을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호주 국세청은 2020년 납세자의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 대여 시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는 토큰 가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답변함^{71), 72)}

□ (지분증명방식의 증가에 대한 대응) 대부분의 과세지침은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으나, 최근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작업증명방식(PoW)이 아닌 지분증명방식(PoS)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바 관련 세무처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⁷³⁾

- 두 방식 모두 프로토콜의 합의를 위한 활동이지만, PoW의 채굴 보상은 대상 거래 당사자와 무관한 채굴자의 활동에 의해 수령되는 반면, PoS의 보상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큰에 기인한 것으로 개념상 투자소득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바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
- PoS 방식에 의해 수령하는 신규 토큰에 대해 처분시점이 아닌 수취시점에 과세하는 경우 희석효과의 반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70) OECD(2020), p. 50

71) 호주 국세청 커뮤니티, "Tax implications of DeFi loaning applications such as compound finance," <https://community.ato.gov.au/s/question/a0J9s00000011FOEA2/p00046444>, 검색 일자: 2022. 12. 21.

72) 2022년 12월 기준 호주 국세청의 스테이킹 보상과 관련된 공식 과세지침은 확인되나 대여이자 등 그 외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공식적인 과세지침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임(코인리(Kionly), "Australia DeFi Crypto Taxes: The Ultimate Guide," <https://koinly.io/blog/australia-defi-tax/>, 검색 일자: 2022. 12. 21.)

73) OECD(2020), p. 51

3) 정책입안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

- OECD는 소득과세제도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정책 마련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함
- (명확한 지침의 마련)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지침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통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목적상의 정의 규정을 구비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한 주요 과세대상 거래 및 유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
 - 가상자산의 생성(채굴, 에어드랍 등) 시 소득 및 비용 과세
 - 가상자산 간, 법정통화와 또는 재화 및 용역과의 교환 시 과세문제
 - 증여 및 상속 시의 문제
 - 도난, 분실 시의 문제
 - 그 외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등과 관련된 문제
 - 가상자산 및 관련 기술의 변화속도를 감안하여 지침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다른 국가 및 국제적 동향을 살펴 관련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세무처리의 도입 논리를 설명하는 경우,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이 등장할 때 납세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과세제도의 정합성 및 일관성)
 -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반 규제체계에 부합하게 설계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조세투명성분만 아니라 법적, 금융 및 소비자 보호규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가상자산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사 유형의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와 일관되어 조세중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납세협력 향상 지원) 납세자의 제반의무 이행과 과세관청이 적시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 교환플랫폼마다 다른 가격, 자금흐름 및 거래날짜에 대한 복잡한 거래기록의 보관의무 등은 납세순응에 장애물로 작용함
- 또한 과세관청이 신뢰 가능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부과하는 역할 수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납세협력지원을 위한 제도의 단순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풀링 규칙을 통해 평가 필요성을 줄이고, 가상자산 간의 교환 시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비사업적이거나 소규모 거래 납세자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개인적 사용에 대한 최소과세기준(예: 거래 또는 소득금액, 수량기준 등)을 두어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한 비과세제도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나. 가상자산의 조세목적상 보고체계

- OECD는 2022년 10월에 암호자산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암호자산의 조세목적상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의 최종안을 발표함
- 암호자산은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⁷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개인의 도움 없이 소유자가 직접 국외 전송할 수 있어 불법 활동에 사용되거나 조세회피의 위험이 있음⁷⁵⁾
- 또한 암호자산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가시성이 낮아 납세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OECD는 국가 간 정기적 정보공유를 통해 암호자산 관련 탈세를 줄이고자 암호자산에 대한 조세목적상 보고체계(CARF)를 제시함

74) CRS는 국외 금융계좌와 관련 조세투명성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되어 2022년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제도로서 관할권 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계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납세자의 거주국 과세당국과 매년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함(OECD, 2022b, p. 6; p. 9)

75) OECD(2022b), p. 9

- CRS는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조세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CARF를 마련함
 - 이번 보고서에서는 적용대상 암호자산의 범위, 자료 수집·보고의무가 부여되는 중개인의 범위, 보고의무, 실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후 CARF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약정체계, 정보교환을 위한 IT 기술 해결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임⁷⁶⁾
- CARF의 적용대상인 암호자산이란 거래를 검증하고 보증하기 위해 암호화된 보안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존하는 디지털 가치 표현임⁷⁷⁾
- CARF는 암호화된 보안 분산원장기술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정의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유사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종 자산에 대비함
 - CARF는 전통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거래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는 스테이블코인, 암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파생상품 및 특정 NFT도 포함됨
 - 납세의무 준수 위험이 제한적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이하 “CBDC”) 등 일부 자산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들 대부분은 FATF 권고 적용대상에 해당됨
- 암호자산의 중개인⁷⁸⁾은 아래 세 가지 유형의 거래에 대해 보고의무를 가짐⁷⁹⁾
- 암호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 암호자산 간의 교환
 - 보고대상 소매결제 거래를 포함한 암호자산의 이전(transfer)
 - 보고대상 소매결제 거래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된 암호자산 거래를 말함⁸⁰⁾

76) OECD(2022b), p. 10

77) OECD(2022b), p. 19

78) 고객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교환거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교환뿐만 아니라 암호자산 브로커 및 딜러, 암호자산 ATM운영자와 같은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중재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함(OECD, 2022b, pp. 11~12; p. 19)

79) OECD(2022b), p. 12

- 사용자를 대신하여 암호자산을 암호자산 서비스공급자 또는 금융기관⁸¹⁾과 무관한 지갑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함⁸²⁾

□ 중개인은 보고대상 거래에 대해서 역년 또는 적절한 기간 단위로 암호자산 사용자와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보고해야 함⁸³⁾

- 개별 사용자의 이름, 주소,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출생연도 및 장소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개인과 같은 수준의 법인 정보뿐만 아니라 실사 결과 확인되는 지배자(controlling person)의 정보 및 지배자의 법인 내 역할에 대한 내용도 보고해야 함
- 중개인의 이름, 주소, 식별번호
- 보고기간 동안 관련 거래가 발생한 암호자산 유형별로 암호자산의 전체 이름, 각 보고유형별 금액 및 수량 총계
 - 과세당국의 자료 유용성 증진을 위해 암호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암호자산 간의 교환을 구분하고 중개인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전 유형(예: 에어드랍, 스테이킹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 암호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거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법정화폐로 보고하고 암호자산 간의 교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시의 공정가액을 법정화폐로 환산⁸⁴⁾하여 보고해야 함

80) OECD(2022b), pp. 12~13; p. 19

81) 가상자산 서비스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은 FATF 권고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함

82) OECD(2022b), p. 16; p. 32

83) OECD(2022b), p. 15

84) 법정화폐로의 환산은 중개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이는 기준에 의함(OECD, 2022b, p. 29)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가. 암호자산 관련 EU 법적 프레임워크

- 암호자산 관련 유럽연합 내 대표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는 유럽 분산원장기술(EU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EU DLT) 시범운영 규칙,⁸⁵⁾ 암호자산규제규칙 (MiCA),⁸⁶⁾ 디지털운영복원력법(DORA)⁸⁷⁾가 있음
 - 세 가지 규칙 모두 유럽 핀테크⁸⁸⁾와 기술경쟁력 향상 및 유럽 경제 내 금융안정성 보장을 목표로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24일자로 공개한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 포함됨⁸⁹⁾
 - 디지털 금융 패키지는 향후 5년 동안의 EU 디지털 금융전략, 소매 지급결제 전략, 암호자산과 DLT 기반 시장 인프라에 대한 파일럿 체제, 디지털 운영 복원력에 대한 입법 제안으로 구성되었음
 - 세 가지 규칙은 EU 법 체계상 규칙(Regulation)에 해당하여 EU 의회의 최종 채택 이후 EU 회원국에서의 제정 없이도 회원국 정부와 민간에 적용될 예정임
 - 세 가지 규칙 모두 현재 EU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임⁹⁰⁾

85) 정식 명칭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pilot regime for market infrastructur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임

86) 정식 명칭은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임

87) 정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Text with EEA relevance)’임

88) FinTech 또는 금융 기술(financial technology)은 혁신적이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최초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전통적인 금융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 기반 시스템 또는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을 지칭함. 핀테크 서비스와 상품은 캐시리스 결제(cashless payments), P2P 대출 플랫폼(peer-to-peer lending platforms), 로봇 트레이딩(robotic trading), 크라우드 펀딩, 가상자산을 포함함(Hoflmayer, 2022, p. 10, 각주 3)

89) 유럽연합 위원회 금융안정국, “Digital finance package,”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igital-finance-package_en, 검색일자: 2023. 1. 16.

1) EU DLT 시범 운영 규칙

- EU DLT 시범 운영 규칙은 기존 EU 금융투자상품 시장에 관한 지침(MiFIDII)⁹¹⁾에서 규제하지 못한 금융투자상품인 DLT 기반 암호자산 거래 및 결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함
 - EU 금융증권시장을 규제하는 MiFIDII는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s)⁹²⁾과 양도성 유가증권(transferable securities)⁹³⁾에 대한 정의 및 적용을 규정하는데, DLT와 암호자산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아 회원국 간 조치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음⁹⁴⁾

- EU DLT 시범 운영 규칙은 DLT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여 DLT 기반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과 사용을 규정함⁹⁵⁾
 - DLT 시장 인프라는 DLT 금융 시장 거래의 근본적인 행위자를 의미하는데 DLT 다자간 거래시설, DLT 증권 결제 시스템, DLT 트레이딩 결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음⁹⁶⁾
 - DLT 다자간 거래시설(Multi Trading Facility, MTF)은 DLT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만 허용하는 다자간 거래시설을 의미함⁹⁷⁾

90) EU DLT 시범 운영 규칙은 2022년 5월에 채택된 시범 운영 규칙은 2023년 3월 23일에 발효 예정 이고 DORA는 2023년 1월 16일 발효 후 24개월 후 적용함

91) 정식 명칭은 ‘The 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Directive 2014/65 -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amending Directive 2002/92/EC and Directive 2011/61/EU(recast)임(유럽연합 법률 공식 사이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4L0065&from=EN>, 검색일자: 2023. 1. 12.)

92) Directive (EU) 2014/65 (Annex I Section C)

93) Directive (EU) 2014/65 Article 4(44)

94) 암호자산의 MiFID II상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EU 회원국의 양도성 증권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유럽연합 법률 공식 사이트,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9221/EPRS_BRI\(2022\)739221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9221/EPRS_BRI(2022)739221_EN.pdf), 검색일자: 2023. 1. 12.)

95) Art. 25(4)(a)(iv) Directive 2014/65 cit

96) Art. 2(5) DLT Regulation cit

97) Art. 2(6) DLT Regulation cit; MiFD II에서는 투자회사 또는 시장 운영자가 운영하는 다자간 시스템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여러 제3자 매매 이해관계를 통합한다고 정의함(Art. 4(22) MiFi II Directive cit)

- DLT 증권 결제 시스템(Security Settlement System, SSS)은 DLT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지급 또는 인도와 대조하여 정산하며,⁹⁸⁾ DLT 트레이딩 결제 시스템 (Trading and settlement, TSS)은 DLT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및/또는 결제를 허용하는 금융 중개자를 의미함⁹⁹⁾
- DLT 시범 운영 규칙 제3조는 시범 운영 규칙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 유형을 주식, 채권, 집합투자펀드 단위(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로 분류하고 규모 및 거래량 요건을 정함
- 제18조는 MiFIDII상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범위에 DLT를 통해 발행한 투자상품을 포함함
- DLT 시장 인프라를 기존 금융 중개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요건에서 제외하고¹⁰⁰⁾ 대신 DLT 관련 추가 요건¹⁰¹⁾ 및 특정 운영 허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¹⁰²⁾

2) MiCA

- MiCA는 MiFID II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를 규정하여 EU 내 암호자산 시장, 암호자산 발행자,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음^{103), 104)}

98) Art. 2(7) DLT Regulation cit

99) Art. 2(10) DLT Regulation cit

100) Arts 4-6 DLT Regulation cit

101) Art. 7 DLT Regulation cit

102) Arts 8-10 DLT Regulation cit

103) 2022년 10월 유럽 이사회가 승인함. 2023년 2월에 MiCA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 후 2023년 초에 제정, 2024년 3월 이전에 발효될 예정임(MayerBrown 법무법인, "EU Markets in Crypto-Assets(MiCA) Regulation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in Early 2023," <https://www.mayerbrown.com/en/perspectives-events/publications/2022/12/eu-markets-in-crypto-assets-mica-regulation-expected-to-enter-into-force-in-early-2023>, 검색일자: 2023. 1. 13.)

104) MiCA는 주요 시장 활동(발행/공모)과 2차 시장(상장)에 대한 접근과 특정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데 여기서 암호자산 서비스는 암호자산과 관련한 다음에서 열거하는 서비스와 활동을 의미함(MiCA Art. 3 (1) No. (9))

- 제3자를 대신하여 암호자산의 보관 및 관리

- 본문은 암호자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봄
- (암호자산의 정의) 암호자산(cryptoasset)을 보안을 위해 암호를 사용하는 가치나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함¹⁰⁵⁾
 -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및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코인, 토큰, 그 밖의 디지털 매체의 형태를 가진
- (암호자산의 유형) MiCA에서는 암호자산의 유형을 자산준거형 토큰,¹⁰⁶⁾ 전자화폐 토큰,¹⁰⁷⁾ 유틸리티 토큰,¹⁰⁸⁾ 증권형 토큰¹⁰⁹⁾으로 구분함¹¹⁰⁾

-
-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 법정통화와 암호자산 교환
 - 암호자산과 다른 암호자산 간 교환
 - 제3자를 대신하여 암호자산에 대한 명령의 집행
 - 플레이싱 방식 암호자산 공모
 - 암호자산 이전
 - 제3자를 대신하여 암호자산에 대한 주문의 수신 및 전송
 - 암호자산 관련 자문 제공
 - 금융투자상품과 암호자산의 교환
 - 암호자산 관련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제공
 -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105) MiCA Art. 3 (1) No. (2)

106) MiCA Art. 3(1) No. (3); 자산준거 토큰(asset-referenced token): 하나 이상의 법정통화를 포함하여 다른 가치나 권리 또는 이들의 조합을 참조하여 안정적인 가치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의 한 유형으로 주로 지급수단 목적으로 함. 다만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MiCA 규정에 따른 자산준거형 토큰으로 보지 않음

107) 전자화폐 토큰(electronic money token or e-money token)은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교환되고 DLT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암호자산의 한 유형으로 주로 결제수단으로 사용함. 보유자에게 법정 화폐와 동등한 가치로 상시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은행이나 기존 전자화폐 발행기관만이 전자화폐 토큰을 발행할 수 있음

108)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DLT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디지털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발행자만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암호자산임(MiCA Art. 3 (1) No. (5))

109)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기능상 동일하며 Mi FID II에 따른 EU 회원국의 법률을 적용함. 보유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익권 또는 기타 권리와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포함함(MiCA PREAMBLE (8a))

110) MiCA Article 3

- MiCA는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암호자산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 유형별로 규제 수준을 차등적으로 규정함
 - 자산준거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의 경우 재무 건전성 요건, 공시 요건, 리스트 관리, 내부 통제 등 요건이 발행자에게 적용됨
 - 자산준거 토큰은 EU 관계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는 은행 및 전자화폐 발행기관으로 엄격하게 제한함
 - 발행 규모와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 금융시스템과 지급결제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토큰(significant asset referenced token)으로 분류하여 추가 규제를 적용함
 -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EU 내 법인을 설립한 발행자가 백서를 공개할 경우 신고만 하면 암호자산 발행과 취득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MiCA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암호자산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기존 금융투자상품 지침을 적용하는 암호자산(증권형 토큰)이나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non-fungible tokens, NFT)에는 적용하지 않음¹¹¹⁾
 - 중개자 없이 완전 분산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암호자산 서비스와 식별 가능한 발행자가 없는 암호자산은 MiCA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음¹¹²⁾

3) DORA

- DORA는 금융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TC) 위험 관리 개선을 목표로 금융기관 및 ICT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디지털 위험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임¹¹³⁾

111) MiCA Art. 2 (2a); 다만 대규모, 집합적으로 발행되는 NFT 또는 NFT 조각의 경우 MiCA의 적용 배제로 보지 않을 수 있음(MayerBrown 법무법인, “EU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Regulation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in Early 2023,” <https://www.mayerbrown.com/en/perspectives-events/publications/2022/12/eu-markets-in-crypto-assets-mica-regulation-expected-to-enter-into-force-in-early-2023>, 검색일자: 2023. 1. 13.)

112) MiCA recital 12a; MiCA는 탈중앙화 금융(DeFi)과 탈중앙화 자치 단체(DAO)의 운영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지 않음

113) 글로벌 회계법인 Deloitte 영국 사이트, “The EU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DORA)

-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사이버 사고를 접하더라도 그 디지털 시스템 운영의 복원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제3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ICT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함
 - 신용기관, 투자펀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 금융 업종 내 모든 규모의 금융 기관에 적용될 예정임

나. 조세분야 행정협력 지침 개정안(DAC8)

- 2022년 12월 8일 유럽 위원회는 EU 과세당국 간 암호자산 정보교환을 위해 조세 분야의 행정 협력 지침(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DAC8) 개정안을 공개함¹¹⁴⁾
- 관련 규정 대부분은 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¹¹⁵⁾를 기반으로 하고 OECD의 개정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¹¹⁶⁾과 EU의 MiCA의 내용을 참조하고 있음

is here: what are its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Boards of FS firms?,” <https://emear.egulatorystrategy.deloitte.com/post/102i2ps/the-eu-digital-operational-resilience-act-dora-is-here-what-are-its-strategic>, 검색일자: 2023. 1. 16.

- 114) 유럽연합 위원회, “Tax fraud & evasion - strengthening rules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and expand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632-Tax-fraud-evasion-strengthening-rules-on-administrative-cooperation-and-expanding-the-exchange-of-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3. 1. 13.; DAC8 개정안은 EU 입법절차를 통해 추가 변경이 가능하지만 본문에서는 암호자산 관련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봄
- 115) 2022년 10월 10일자로 승인된 CARF는 일련의 실사절차와 암호자산과 서비스 제공자의 공통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보고를 규정함. 2026년 1월 1일자로 발효 예정임
- 116) 2022년 10월 10일자로 승인된 개정 CRS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특정 전자 화폐 상품을 정보 교환 범위 내에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3년 3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¹¹⁷⁾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EU 회원국 입법절차가 완료한 이후 2026년 1월 발효 예정임
- DAC8 개정안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provider)의 보고의무에 중점을 두고 EU 회원국 간 암호자산 정보 교환을 구현을 목표로 함
 - 기존 DAC 규정은 암호자산을 정보교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암호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암호자산 관련 정보를 EU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MiCA의 적용을 받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user)에 대한 일련의 실사 절차, 제공자의 보고의무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
 - DAC8 규정의 적용대상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는 EU 내 설립한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와 EU 거주 사용자에게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모든 암호자산 운영자(operator)도 포함함¹¹⁸⁾
 - DAC8은 암호자산 정보의 보고 절차는 세 단계로 규정함¹¹⁹⁾
 - 1단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DAC8 규정에 따른 실사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보고 대상 암호자산 거래의 관련 정보를 수집함
 - 2단계) 제공자는 수집한 암호자산 관련 정보를 근거지를 두거나(EU 설립 제공자) 등록지가 있는(외국 설립 제공자) EU 회원국의 과세당국에 보고함

117) 유럽연합 위원회, "Tax fraud & evasion - strengthening rules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and expand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632-Tax-fraud-evasion-strengthening-rules-on-administrative-cooperation-and-expanding-the-exchange-of-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3. 1. 6.

118) 보고 대상 이용자가 교환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암호자산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모든 암호자산 운영자를 의미함(COM(2022) 707 final, 8 Dec. 2022, p. 11)

119) Kluwer International Tax Blog, "The DAC8 Proposal and the Future of Crypto-Asset Reporting: Some Preliminary Thoughts," https://kluwertaxblog.com/2023/01/09/the-dac8-proposal-and-the-future-of-crypto-asset-reporting-some-preliminary-thoughts/#_edn2, 검색일자: 2023. 1. 13.

- 3단계) 보고받은 관할 과세당국은 암호자산 이용자의 납세식별번호, 암호자산 거래 정보 등을 이용자가 거주하는 관할 과세당국으로 전송함

- DAC8에서는 적용대상 암호자산을 MiCA 제3조의 암호자산 정의를 참조하여 보고 대상 암호자산을 규정함¹²⁰⁾
- 작업증명(PoW)이나 지분증명(PoS) 외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에 따른 암호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함¹²¹⁾

120) Section IV of Annex VI

121) Kluwer International Tax Blog, "The DAC8 Proposal and the Future of Crypto-Asset Reporting: Some Preliminary Thoughts," https://kluwertaxblog.com/2023/01/09/the-dac8-proposal-and-the-future-of-crypto-asset-reporting-some-preliminary-thoughts/#_ednref10, 검색일자: 2023. 1. 16.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과세제도

1. 한국

가. 가상자산 분류와 회계처리

-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음
 - 2016년경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19년 FATF 총회에서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함에 따라 2020년 3월 특금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¹²²⁾

- 특금법은 가상자산이란 다음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인 것으로 정의함^{123), 124)}
 -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 및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122) 김재진·최인석(2022), p. 241

123)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

124) 이해정 외(2022), pp. 26~28

-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것
-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FATF의 정의방식을 차용하여 가상자산을 정의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 지불수단으로 범용되지 않고 있으며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ATF와는 달리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교환 토큰에 가장 유사한 개념인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음^{125), 126), 127)}
 - 특금법에서는 “지불 또는 투자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적용대상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상화폐로 통칭되는 교환 토큰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됨
- 한편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으로 구분하고 이원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규율 체계의 마련을 논의 중에 있음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여 이원적으로 규율할 것으로 밝힘¹²⁸⁾
 -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별도 법안(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통해 마련된 규율을 통해 이원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밝힘

125) 『머니투데이』, 「[단독]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2021. 11. 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214122494481>, 검색일자: 2023. 1. 19.; 금융위원회,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머니투데이 11.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보도설명, 2021. 11. 23.

126) 최정희(2020), pp. 72~73

127) 오문성 외(2022), p. 14

128) 대한민국정부(2022), p. 70

-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보도자료에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할 계획임을 밝힘¹²⁹⁾
 - 증권형 토큰을 토큰 증권(Security Token)으로 명명하고 증권 해당 여부는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함¹³⁰⁾
 - 기존 법령을 개정하여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할 수 있게끔 제도화할 것으로 밝힘
- 한국회계기준원은 질의회신 방식을 통해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가상자산은 보유목적에 따라 채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밝힘^{131), 132)}
 -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봄
 - 가상자산이 현재 일반적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또는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IFRIC”)^{133), 134)}와 견해를 같이 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해됨

1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2. 6.)

130) 증권 여부의 판단은 법률에 이미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판단 지원을 위해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131) 한국회계기준원,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2019. 12.,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17&bbsSeq=34533, 검색일자: 2023. 3. 24.

132) 우리나라의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받으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중 그 외의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음

133)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을 해석하고 지침을 제정하는 기구이며, 국제회계기준은 우리나라, EU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7개 국가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음(국제회계기준: IFRIC, “Holdings of Cryptocurrencies-June 2019,” 2019. 6., <https://www.ifrs.org/use-around-the-world/use-of-ifrs-standards-by-jurisdiction/>, 검색일자: 2023. 1. 19.)

134) IFRIC,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2019. 6.,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2019/holdings-of-cryptocurrencies-june-2019.pdf>, 검색일자: 2023. 1. 19.

- IFRIC은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가상자산¹³⁵⁾ 자문요청에 대해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가상자산(교환 토큰)은 보유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발표함
- IFRIC은 쟁점 가상자산은 현금 및 다른 실체에 대한 지분증권(equity instrumen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이 아닌 것으로 밝힘

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 우리나라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마련함
 -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 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의 과세방법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소득은 2021년 10월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가 두 차례 연기 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될 예정임
- 「소득세법」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됨
 -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특금법상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음
 - 가상자산은 통화에는 해당되지 않으며,¹³⁶⁾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소득세법」상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됨
 - 정부는 세법개정안 질의문답을 통해 가상자산은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무형자산의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언급함¹³⁷⁾

135) 검토대상인 가상자산이란 보안을 위해 암호화기술을 사용하는 분산원장에 기록된 디지털 또는 가상 화폐로 특정 관할당국 또는 제3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고 발행자에 대한 계약관계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136) 「한국은행법」 제47조, 제48조

137) 기획재정부(2020), p. 44

- 참고로 그 외 관련 법령 및 법원에서도 가상자산은 무형의 재산인 것으로 보고 있음
 - 「국세징수법」은 재산권의 압류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동산, 유가증권,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고 있음¹³⁸⁾
 - 대법원은 범죄수익의 몰수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것으로 판시함¹³⁹⁾

다. 단계별 과세제도

1) 가상자산의 취득 및 보유단계

가) 블록체인 거래 합의에 따른 취득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채굴 및 스테이킹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시기, 소득구분 및 취득가액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굴 및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해당 활동을 사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을 것이나 불분명함¹⁴⁰⁾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소득의 과세 개시시기(202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의제규정은 있으나 채굴 및 스테이킹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138) 「국세징수법」 제55조

139)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40)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동시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9조)

나) 보유기간 중 이벤트에 의한 취득

- 과세관청은 보유기간 중 무상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¹⁴¹⁾
 - 2022년에 기획재정부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가상 자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질의문에서는 하드포크, 에어드랍,¹⁴²⁾ 스테이킹 등을 언급하였으나 답변에서는 구체적 거래에 대한 적시 없이 무상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기술함
 - 다만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대상인 것으로 답변함

- 하드포크,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대가성 없이 실질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대가성이 있는 에어드랍, 하드포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점에 가치가 없는 경우의 과세문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다) 가상자산의 대여

- 가상자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후술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대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대여(Lending), 유동성 공급에 따른 소득, 위임 스테이킹에 따른 소득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있음

141)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 7. 25.

142) 에어드랍은 일반적으로 특정 가상자산 보유자의 지갑에 코인이나 토큰을 무료로 제공하는 신규 가상 자산 기업에서 사용하는 마케팅수단임(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irdrop-cryptocurrency.asp>, 검색일자: 2023. 1. 5.)

- 직접 스테이킹과 달리 위임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거래의 합의과정에 참여자의 직접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의 대여로 분류되어 관련 보상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 다만 관련된 지침이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세무처리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상자산의 대여대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¹⁴³⁾

2) 가상자산의 처분단계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도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¹⁴⁴⁾
 - 개인의 비사업적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됨
 - 개인의 사업적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함
-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의하며,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함^{145), 146)}
 -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¹⁴⁷⁾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 그 외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 납세협력비용 및 시장혼란방지 등을 위해 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함

143)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144)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145)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항

146) 기획재정부(2020), p. 46

14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함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¹⁴⁸⁾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각 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을, 그 외는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시가로 봄

-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연도 중 발생한 손익의 통산 후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됨¹⁴⁹⁾
 -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도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¹⁵⁰⁾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소득자는 매년 1회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은 지급자의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¹⁵¹⁾
 -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이므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는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함
 -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순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됨¹⁵²⁾
- 납세자의 연도 중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손익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통산) 및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될 수 없음
 - 과세기간 중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함

148)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2021년 2월 17일 고시에 의하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해당됨

149)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의 적용을 배제하지만(「소득세법」 제127조 6호 다목)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함(「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16항)

150)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임

15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152)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3) 기타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2025년부터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¹⁵³⁾

- 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회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보고대상 기간 중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일자, 유형, 수량, 단가 등)과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 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한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익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¹⁵⁴⁾
 -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시행되어 2023년 6월 최초로 신고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란 현금, 증권, 파생상품, 가상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를 말함
 - 계좌보유자의 정보(이름, 주소 등)와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함

2. 미국

가. 가상자산의 분류와 회계처리

- 미국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국세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규율 및 규제하고 있으며 통일된 명확한 분류체계 및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¹⁵⁵⁾

153) 「소득세법」 제164조의4

1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 SEC는 Howey 테스트¹⁵⁶⁾를 기준으로 개별 디지털자산별로 증권성 유무를 판단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대표적인 디지털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반면,¹⁵⁷⁾그램(Grams), 킨(Kin), 리플(XRP)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의 실질이 있는 것으로 봄¹⁵⁸⁾
 - CFTC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교환 토큰)를 상품으로 선언하고 감독하고 있음¹⁵⁹⁾
 -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류가 없어 SEC와 CFTC 등 규제기관의 중복된 권한행사 및 관할권 충돌위험에 대한 지적이 있음^{160), 161)}
- 미국 정부는 2022년 3월 행정명령 발표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참여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및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 수준의 시스템 위기관리 체계 등의 구축, 기관 간 조정 프로세스 설정 등을 지시함¹⁶²⁾
 - 디지털자산이란 모든 CBDC 및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발행 되거나 표시되는 지급·투자·이전 및 교환에 사용되는 가치, 금융자산, 금융상품, 청구권의 표시인 것으로 정의함¹⁶³⁾

155) 한국은행(2022), p. 16; 김재진·최인석(2022), p. 118

156) 증권법상 투자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대법원의 분석기준을 말함

157) 김흥기(2022), p. 16

158) 김재진·최인석(2022), pp. 122~123

159) 김재진·최인석(2022), pp. 126~127

160) 법률사무소 GLI, *Blockchain & Cryptocurrency Regulation 2023*, <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practice-areas/blockchain-laws-and-regulations/usa>, 검색일자: 2023. 2. 15.

161) 코인테크스 코리아, 「코인베이스 “단일하고 새로운 규제 기구 신설” 제안」,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43>, 검색일자: 2023. 2. 15.

162) 백악관,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3/09/executive-order-on-ensuring-responsible-development-of-digital-assets/>, 검색일자: 2023. 2. 15.

- 행정명령은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미국의 우위를 공고히 하도록 시장 참여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신뢰제고를 위한 투명성, 정보보안,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 마련 등을 요구함
- 양당 상원의원이 2022년 7월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은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정의, 규제관할,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다루고 있음¹⁶⁴⁾
 - 디지털자산은 경제적 권한, 접근권한 및 소유권한이 부여되고 암호화된 분산 원장기술 및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해 기록되는 고유한 전자적 자산을 말함
 - 디지털자산에 대한 SEC와 CFTC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권과 상품의 중간지대에 있는 부수자산(ancillary asset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자산은 상품으로 추정하여 CFTC가 관리할 것을 제안함
 -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를 강화하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보 공개의무의 강화를 제안함
 - 그 외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액 재화 및 용역 구매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시기 이연, 디지털자산의 대여에 대한 자본이득 비과세 등의 내용을 제안함
- 미국재무회계위원회(FASB)¹⁶⁵⁾는 디지털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되 다른 무형자산과 구분하여 시가평가하도록 하고 있음^{166), 167)}

163) 디지털자산에는 CBDC,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되며, 암호화폐란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생성 또는 소유권 기록이 지원되는 교환매체가 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을 말함

164) CRS(2022), pp. 1~3

165) 미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FASB는 미국의 재무회계·보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함

166) 미국재무회계위원회, “Accounting for and Disclosure of Crypto Assets Tentative Board Decisions to Date As of December 14, 2022,” <https://www.fasb.org/Page/ShowPdf?path=CRYPTO-TBDs%20to%20Date-20221214.pdf&title=Accounting%20for%20and%20Disclosure%20of%20Crypto%20Assets%E2%80%94Tentative%20Board%20Decisions%20to%20Date>, 검색일자: 2023. 1. 19.

167) 미국재무회계위원회, “Accounting for and Disclosure of Crypto Assets,” <https://www.fasb.org/Page/ProjectPage?metadata=fasb-Accounting-for-and-Disclosure-of-Crypto-Assets>, 검색일자: 2023. 1. 19.

- FASB는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수의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2월 이사회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합의함
 - 다만 이는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닌 잠정적인 결론으로 추후 심의절차 등을 거쳐 공식화될 예정임
 - 동 지침의 적용대상인 디지털자산은 미국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 것으로 자산소유자에게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보안을 위해 암호화기술을 사용하는 대체 가능한 자산임
-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매 보고기간마다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다른 무형자산과 구분하여 손익(이익 및 손실)을 인식하여야 함
- FASB는 2023년 중 디지털자산 보유자에 대한 명확한 회계 및 공시규칙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¹⁶⁸⁾

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 미국 국세청은 2014년 공지(2014-21)를 통해 가상화폐의 과세지침을 밝혔으며 이후 자주 묻는 질문(FAQs), 예규, 법무실 조언(Chief Counsel Advice) 형태로 가상화폐 관련 세무처리를 안내하고 있음¹⁶⁹⁾
- 국세청은 2014년 공지를 통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일반 과세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함

168) 월스트리트저널, "U.S. Accounting Rule Maker Looks to Advance Projects on Tax, Crypto and Expenses in 2023", 2022. 12. 28., https://www.wsj.com/articles/u-s-accounting-rule-maker-looks-to-advance-projects-on-tax-crypto-and-expenses-in-2023-11671742912?mod=markets_featst_pos3, 검색일자: 2023. 1. 19.

169) 미국 국세청(IRS),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digital-assets>, 검색일자: 2022. 12. 27.

- 이후 2019년의 FAQs,¹⁷⁰⁾ 예규 등을 통해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에 대한 과세 방식을 추가 안내함
 -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regulation)을 발표하지 않았음¹⁷¹⁾
- 미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명칭하며 이는 암호화된 보안 분산원장¹⁷²⁾ 또는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해 기록되는 디지털로 표현된 가치인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함^{173), 174)}
- 디지털자산에는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NFT가 포함됨
 - 교환 가능한(convertible) 가상화폐란 거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계산의 단위(unit of account),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가진 법정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갖거나 법정화폐의 대체 역할을 하는 디지털자산을 말함¹⁷⁵⁾
 - 암호화폐란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사용될 수 있거나 사용자들 간에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고 법정화폐 또는 디지털자산과 교환이 가능한 가상화폐의 한 예임
 - 미국 국세청은 당초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었으나 2022년 소득세 신고에 앞서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하여 정의함¹⁷⁶⁾

170) FAQs는 미국 국세청 간행물(Internal Revenue Bulletin)로 발행되지 않아 국세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GAO, *Virtual Currencies - Additional information reporting and clarified guidance could improve tax compliance*, 2020. 2., p. 20)

171) Jim Calvin, “Portfolio 190-1st: Taxation of Cryptocurrencies,” 미국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B1QQH8#section\(3\)_0](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B1QQH8#section(3)_0), 검색일자: 2023. 1. 2.

172) 분산원장기술은 독립된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여 거래를 기록, 공유 및 동기화하며, 세부정보는 중앙데이터저장소 또는 관리기능 없이 다수의 장소에 동시에 기록함(Rev. Rul. 2019-24)

173) 미국 국세청(IRS), “Digital Asset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digital-assets>, 검색일자: 2022. 12. 27.

174)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브로커의 국세청 보고의무를 다루고 있는 내국세법 제6045(g)(3)(D)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인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동조의 적용범위 내에서의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 국세청의 홈페이지상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와 내국세법 제6045(g)(3)(D)의 정의가 동일함

175) IRS, Notice 2014-21 Section 2. Background

176) 미국 Bloomberg Tax, “Looking to 2023, IRS Cryptocurrency Enforcement Is Just Beginning,” 2022. 12. 3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NB1DF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

- 미국은 국세청 지침을 통하여 디지털자산은 소득세 목적상 자산(property)인 것으로 밝힘
 -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¹⁷⁷⁾는 통화가 아닌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 자산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세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밝힘
 - 가상화폐 과세는 ‘교환가능’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않는 유틸리티 또는 증권형 토큰은 동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청은 디지털자산이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자산에 해당되는지를 밝히지는 않았음

다. 단계별 과세제도

1) 가상자산의 취득 및 보유단계

가) 블록체인 거래 합의에 따른 취득

-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채굴로 신규 가상화폐를 수령하는 경우, 수령시점에 신규 가상화폐의 공정가액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힘¹⁷⁸⁾

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Y2gvcmlvZDlx0cy8wMjY0Zjg0N2E4NTViYjI0NW11OWIzZjNjNDc5YjY3NCJdXQ—32c725b88a22b40d4de49f0222affd01858e4b82&criteria_id=0264f847a855bb245b59b3f3c479b674&search32=e81iHTn1fO11eslwPUG2Pg%3D%3DCNz90qDlgyzilPugPXfuX1WIW5CfKx_8Pmzj6efllfAlanDLCmWsH72SXNhghoHbB4EGbR-Mn0Rd6NnKm4Bq7AoYyWMKO2jHQQXdQSEvVXPFR9h6rArHv3t6OLEMilVf07XG0fXStI3F4eWlk0VfYxXo7O4Wbu3R-flexj3IRXwRyBJ6Yr3-p1Y1unWHOyUWX7h8CAP24erHDPX0s8FvTm29UREXO5IrGz8130jT53r1QIEZXY34hQ9Q_DUyYmuCwO6q3-98Iy2_oO2zClGNaxRn6fSWbsuEmx0ghH0thM4HRdDwLSnPC92txrRLObjcfrChDC31h2REc8SS2XAFgAvhmSrA6gzWJ9BO5VJDj_C9rD_OKO9GARvc3uB5V_hv3KcVXZ5ZYU6s-hilYMngwqTyTh49k9cVzhIHJQI6bnlK_TBpP94LHcnkO1Nx2Q31HLAToTdu1BDMVhgzkYsWQ%3D%3D, 검색일자: 2023. 1. 2.

177)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음

178) IRS, Notice 2014-21, Q&A 8-9

- 미국은 채굴소득의 사업성 유무에 따라 소득유형을 달리 하나 소득세 과세목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¹⁷⁹⁾
 - 채굴을 사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외 취미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소득세 목적으로는 모두 총소득에 포함되며 비용공제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음¹⁸⁰⁾

- 미국 국세청은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방법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의 과세방법은 일명 ‘Jarrett 사건’ 이후 현재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¹⁸¹⁾
 - 채굴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2014년 국세청 공지를 통해 제시되었으나,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방법에 대한 공식 지침은 없음
 - Jarrett 부부는 스테이킹 보상은 추후 처분시점의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기납부세액의 환급요청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 이전에 국세청이 세금을 환급하면서 과세시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없이 사건이 각하됨^{182), 183), 184)}
 - Jarrett 부부는 2019년 중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함
 - Jarrett 부부는 이후 국세청에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적시에 응답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21년 5월 테네시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Jarrett 부부는 스테이킹 보상은 새로 생성된 자산(예: 케이크)이므로 수령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함

179) Avi-Yonah and Slaimi(2022), p. 24

180) 채굴을 위해서는 많은 컴퓨터 자원이 소요되는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채굴이 사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Avi-Yonah and Slaimi, 2022, p. 25)

181) Avi-Yonah and Slaimi(2022), p. 27

182) Jim Calvin, “Portfolio 190-1st: Taxation of Cryptocurrencies,” 미국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5067102760>, 검색일자: 2023. 1. 3.

183) McDermott Will & Emery, “JARRETT LEAVES UNANSWERED QUESTIONS ON TAXATION OF STAKING REWARDS,” 2022. 10. 4., <https://www.mwe.com/insights/jarrett-leaves-unanswered-questions-on-taxation-of-staking-rewards/>, 검색일자: 2023. 1. 5.

184) McDermott Will & Emery, “RECENT TAX DEVELOPMENTS CONCERNING STAKING REWARDS,” 2022. 2. 4., <https://www.mwe.com/insights/recent-tax-developments-concerning-staking-rewards/>, 검색일자: 2023. 1. 5.

- 2022년 2월 미국 법무부 세무부서는 납세자에게 전액 환급승인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가 환급액의 수령을 거부함
 - 납세자에 대한 환급진행이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시기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2022년 9월 30일 지방법원은 소장에 요구된 세액과 이자의 환급이 완료되어 납세자의 주장이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미국 정부의 소송 각하(dismissal) 신청을 승인함
- 즉 국세청은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시점의 과세소득인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Jarrett 사건 이후의 국세청 및 법원의 공식입장이 제시되지 않아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시기 및 소득유형은 불분명한 상태임

나) 보유기간 중 이벤트에 의한 취득

- (하드포크¹⁸⁵) 납세자가 하드포크를 통해 신규 가상화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가 과세됨¹⁸⁶
 - 미국 세법상 납세자가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명확하게 실현된 부인할 수 없는 부의 증가 및 모든 이익은 총소득에 포함되며, 총소득에 포함되는 구매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수령 시의 공정가액에 의함¹⁸⁷
 - 이에 근거하여 하드포크로 수령한 신규 가상화폐의 수취시점 공정가액을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가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시점에 신규 가상화폐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가지게 되므로 해당 시점의 공정가액을 소득으로 인식함

185)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원시분산원장으로부터 영구 전환으로 이어지는 프로토콜의 변화를 겪는 것을 하드포크로 설명함. 다만, 하드포크에 대한 세무처리를 설명하면서 하드포크에 따른 신규 가상화폐의 수령을 에어드랍으로 설명하여 하드포크의 개념을 오해했다는 지적이 있음(NYSBA, 2022, pp. 11~12.; Avi-Yonah and Slaimi, 2022, p. 59)

186)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Q. 22-25,"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검색일자: 2022. 12. 28.

187) Rev. Rul. 2019-24, p. 4

- 그러나 해당 거래가 분산원장에 기록되었더라도 납세자가 신규 가상화폐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규 가상화폐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봄¹⁸⁸⁾

○ 하드포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상화폐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 (에어드랍) 에어드랍에 대한 별도의 국세청 지침은 확인되지 않음

○ 국세청은 하드포크 결과 신규 가상화폐를 수령하는 방법을 '에어드랍'으로 지칭하고 이와 같은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활용되는 에어드랍에 대한 과세방법은 설명하지 않았음

- 다만 국세청의 하드포크 과세논리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에어드랍으로 취득하는 가상화폐 또한 수령한 시점에 과세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¹⁸⁹⁾

다) 가상자산의 대여

□ 납세자가 가상화폐를 대여하거나 유동성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문제는 크게 1) 대여 또는 유동성 공급 시 과세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대여 등으로 인해 수취하는 보상의 과세에 대한 문제로 구분될 수 있음

188) 예를 들어 신규 토큰이 수취되는 주소(address)가 교환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지갑에 있고 해당 교환업자가 신규 토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신규 토큰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임. 이와 같은 경우 추후 납세자가 해당 신규 토큰에 대한 양도, 판매, 교환 등의 처분권을 가지게 되는 때에 납세자는 비로소 신규 토큰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함(Rev. Rul. 2019-24, pp. 2~3). 실제로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비트코인캐쉬'가 신규 배분되었으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비트코인캐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동 날짜 이전에는 비트코인캐쉬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Chief Counsel Advice (CCA) 202114020, pp. 1~2)

189) NYSBA(2022), pp. 64~65

(1) 가상자산의 대여 및 유동성 공급

- 납세자가 가상화폐를 대여하거나 유동성풀에 공급하는 행위는 증권대차거래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증권의 대차거래란 증권의 소유자가 수수료를 받고 증권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입자)에게 양도하면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차입자가 다시 동종·동량의 증권을 대여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거래를 말함¹⁹⁰⁾
 - 납세자는 스마트계약 또는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기간 이후 동종 및 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가상화폐를 대여 또는 유동성 공급하고 관련된 보상을 수취하며 이는 증권대차거래와 유사한 면이 있음
- 미국 내국세법 제1058조는 증권(security)¹⁹¹⁾의 대차거래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세청은 의견을 밝히지 않을 예정임
 - 증권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자본이득이 과세되는 거래이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이 비과세됨¹⁹²⁾
 - 차입자에게 만기 시 동종 증권의 반환의무가 있으며 쟁점 거래가 없었다면 대여자가 대여기간 동안 수취하였을 이자, 배당금, 기타 분배금 등을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등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 비과세함
 -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임¹⁹³⁾
- 한편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3월 예산안을 통해 현행 증권대차거래 비과세 규정에 디지털자산의 대여도 포함할 것을 제안함^{194), 195), 196), 197)}

190) 이용준(2009), pp. 108~111

191) 동 조항의 적용대상인 증권은 모든 회사의 주식, 주식증서 또는 회사의 지분, 어음, 채권, 사채 또는 부채의 증거, 전술한 항목의 구매 또는 구독할 권리의 증거를 말함(I.R.C. §1236(c))

192) I.R.C. §1058

193) Rev. Proc. 2022-3, §3.01(99); Jim Calvin, "Portfolio 190-1st: Taxation of Cryptocurrencies," 미국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5067095080>, 검색일자: 2023. 1. 3.

- 재무부는 디지털자산의 대여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내국세법 제105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자산의 세무처리에 대한 공식입장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함
 - 재무부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이 동법상의 증권에 해당된다면 적용을 받을 것이나 그 외 디지털자산의 세무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공식입장이 없다는 논지의 원론적 의견을 제시함

(2) 가상자산의 대여 및 유동성 공급에 따른 소득

-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유동성품에 공급하는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일명 ‘이자 상당액’을 수취함
 -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제공기간과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일명 이자 상당액(또는 안정화 수수료라 함)을 수수함
 - 대표적 대여 프로토콜인 아베는 이자 및 수동적 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¹⁹⁸⁾
- 국세청은 일명 이자로 수취하는 쟁점 수수료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음
 - 다만 경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¹⁹⁹⁾

194)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23 Revenue Proposals*, 2022. 3., p. 94

195)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사유가 가상자산 대여거래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NYSBA의 주장과 같이 내국세법 제1058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행 일반 법령하에서도 사안별 평가에 따라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196) 이와는 별도로 2022년 6월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Synthia Lummis, Kirsten Gillibrand)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 또한 내국세법 제1058조항을 수정하여 디지털자산의 대출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205)을 담고 있음

197) 2023년 2월 현재 관련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처리가 불확실한 영역으로 언급됨(딜로이트, "Tax positions on crypto transactions Preparing for the 2022 tax season,"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tax/articles/taxation-of-digital-assets.html>, 검색일자: 2023. 2. 9.)

198) 아베(Aave), <https://docs.aave.com/faq/>, 검색일자: 2023. 1. 13.

199) PWC(2022), p. 110

- 미국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있음

(3) 스테이킹 위임에 따른 소득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특정 검증자가 스테이킹에 사용하도록 위임하고 제공받은 보상은 직접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보아야 할 수 있음
 - 직접 스테이킹과 달리 위임 스테이킹의 경우 해당 검증에 납세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스테이킹의 경제적 실질을 달리 볼 수 있음

- 국세청은 관련하여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위임 스테이킹 소득은 이자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주장이 있음
 - Parsons(2022)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위임하고 보상의 일부를 받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대여활동으로 보아 이자소득 또는 임대료인 것으로 주장함²⁰⁰⁾
 - 위임 스테이킹의 경우 참여자가 자신의 장비를 유지하고 사용하면서 직접 검증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해당 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검증용역을 수행한 것이기보다는 토큰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자소득 또는 미국 국세청이 디지털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함
 - NYBSA(2022)는 납세자와 특정 검증자 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로 받은 소득인 것으로 주장함²⁰¹⁾
 - 가상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유효성 검증권리(무형자산)를 제3자인 특정 검증자에게 대여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주장함

200) Parsons(2022), p. 16

201) NYBSA(2022), p. 49

2) 가상자산의 처분단계

- 내국세법은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하므로 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 관계가 적용되며 가상화폐의 처분에 따른 소득은 자본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됨²⁰²⁾
 -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처분손익은 일반세율로 종합과세됨
 - 일반세율은 10~37%의 누진세율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²⁰³⁾
 - 사업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의 가상화폐 처분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함
 - 자본이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하는 일반세율로 보유기간 1년 초과는 독신 기준으로 4만 1,676달러까지는 비과세, 이후 45만 9,750달러까지는 15% 과세, 초과분은 20%로 과세됨²⁰⁴⁾

- 미국은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거래, 가상화폐를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 가상화폐 간의 교환거래 모두 '가상화폐의 처분'으로 보아 과세함²⁰⁵⁾
 - 납세자 본인의 지갑, 주소 또는 계정 내에서의 가상화폐 이전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²⁰⁶⁾
 - 참고로 미국 내국세법 제1031조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like-kind exchange) 거래에 대해서 비과세하였으나 2018년부터 가상화폐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²⁰⁷⁾

202) IRS, Notice 2014-21, Q&A 7

203) IRS, Rev. Proc. 2022-38, pp. 5~7

204) IRS,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검색일자: 2023. 1. 10.

205)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Q. 16,"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검색일자: 2022. 12. 28.

206)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Q. 38,"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검색일자: 2022. 12. 28.

207) Jim Calvin, "Portfolio 190-1st: Taxation of Cryptocurrencies," 미국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5067094568>, 검색일자: 2023. 1. 2.

- 2018년부터 동종자산 간의 교환규정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 개정 이전에도 가상화폐 간의 교환거래에 대해 동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²⁰⁸⁾

- 가상화폐 취득가액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격의 미국달러 환산액임²⁰⁹⁾
 -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격을 해당 시점의 미국달러로 환산한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봄²¹⁰⁾
 - 중앙화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었으나 분산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개인 간 거래(P2P) 또는 다른 사유로 오프체인(off-chain)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온체인거래였다면 원장에 기록되었을 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국세청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전 세계 가상화폐 지수를 분석하는 가상화폐 탐색기 또는 블록체인 탐색기가 결정한 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받아들이며, 그 외의 가격에 의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로 공표된 공정가액이 없는 가상화폐를 수령한다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식별 자료의 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짐^{211), 212)}

208)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의 교환거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교환거래에 대해 각 가상자산의 전반적인 디자인, 의도된 사용방향 및 실제 사용현황 등이 상이하므로 동종자산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 (Chief Counsel Advice(CCA) 202124008; IRS, ILM 202124008)

209)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Q. 26-27,"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검색일자: 2022. 12. 28.

210) IRS Notice 2014-21, Q&A-6

211)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Q. 39-41,"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검색일자: 2022. 12. 28.

-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되 그 외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취득가액을 결정함
- 개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키, 퍼블릭키와 같은 특정 단위의 고유한 디지털 식별사항을 문서화하거나 거래기록을 제시해야 함
 - 거래기록에는 각 단위의 취득 날짜와 시간, 취득 당시 각 단위의 공정가치, 각 단위의 처분·교환 거래 등에 대한 날짜, 시간, 공정가치 및 대가로 수취한 금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자본손실이 자본이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손실금액은 3천달러(부부별도 신고의 경우 1,500달러)까지 경상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²¹³⁾
 -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순자본손실은 다음 과세연도로 기한제한 없이 이월하여 공제될 수 있음²¹⁴⁾
- 가상화폐를 처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세법 규정에 따라 가상화폐 처분거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함²¹⁵⁾
 - 판매·교환·처분 당시 가상화폐의 공정가치
 - 가상화폐 구입·판매 영수증(날짜, 시간) 등
- 가상화폐의 자본이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원천징수될 수 있음^{216), 217), 218)}

212)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주식 및 채권에 대해 적용되는 방법을 준용하여 설명됨(Jim Calvin, "Portfolio 190-1st: Taxation of Cryptocurrencies," 미국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5067096616>, 검색일자: 2023. 1. 3.)

213) I.R.C. §1221; IRS, "Topic No. 409 Capital Gains and Losses,"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검색일자: 2023. 2. 7.

214) I.R.C. §1212(b); Treas. Reg. §1.1212-1

215)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Q. 46,"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검색일자: 2022. 12. 28.

216) Jim Calvin, "Portfolio 190-1st: Taxation of Cryptocurrencies," 미국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25067105320>, 검색일자: 2023. 1. 12.

- 가상자산의 지급 시 수취인의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요청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정확한 자료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 미국 내국세법에 의하면 이자, 배당, 중개인에 의한 지불,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자는 거래보고 의무에 따라 거래자에게 TIN을 요구해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²¹⁹⁾
 - 만일 거래자의 TIN을 제시받지 못하거나 재무부로부터 부정확한 TIN으로 통보받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차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함²²⁰⁾

3) 기타

- 모든 납세자는 과세연도 중 디지털자산의 수취 및 처분 여부를 납세신고서에 기재 하여 신고해야 함
 - 2021과세연도 납세신고부터 신고서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체크박스를 마련하여 과세연도 중 디지털자산의 취득 및 처분 여부를 기표하도록 함²²¹⁾
 -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디지털자산이 수수된 경우, 보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받은 경우, 하드포크 및 채굴, 스테이킹 등으로 신규 디지털자산을 받은 경우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재무적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을 이에 대한 예시로 설명함

217) IRS Notice 2014-21, Q&A-14

218) 현재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중개자가 고객에게 TIN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래 기술하는 내국세법 제6045조의 시행 이후에는 강제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미국 Bloomberg Tax, <https://news.bloombergtax.com/tax-insights-and-commentary/cryptocurrency-and-other-digital-assets-reporting-still-on-hold>, 검색일자: 2023. 2. 20.)

219) I.R.C. §3406

220) IRS, "Backup Withholding,"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ackup-withholding>, 검색일자: 2023. 1. 12.

221) IRS, *Tax year 2022 1040(and 1040-SR) Instructions*, 2022. 12. 23., p. 15

- 국세청은 납세신고서상 기표를 통해 관련 정보 수집, 납세행정집행 이외에도 납세자에 대한 교육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밝힘²²²⁾
 - 신고서 첫 페이지에 디지털자산 거래 여부를 기표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의무에 대한 납세자 주의 환기효과를 기대함
- 미국은 디지털자산 브로커에게 고객의 디지털자산 거래내역 및 계정 간 이체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임²²³⁾
 -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은 디지털자산 브로커가 고객의 디지털자산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관련 내국세법을 개정하도록 함²²⁴⁾
 - 내국세법 제6045조는 주식 및 증권 등의 중개업자에 대한 고객의 거래내역 보고의무를 두고 있는데 동 조항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브로커는 고객의 디지털자산 거래내역, 처분자산의 취득가액, 거래 손익, 장·단기 자본이득 여부, 고객의 구체적인 신상정보 등을 보고해야 함
 - 또한 디지털자산 브로커는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함

222) Isabel Gottlieb, “Crypto 1040 Tax Return Question Has ‘Educational’ Role, IRS Says,” 2022. 11. 3. [223\) IRS, “Announcement 2023-2,” <https://www.irs.gov/pub/irs-drop/a-23-02.pdf>](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D7FKT0C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VhcnVzZDZlcy85ZW12NTcyNzI4MGU5NjllZDRhYThhY2U4Y2E2OW10YSJdXQ—019b93ed6ce8f113c577f759cdb898d05706e02a&criteria_id=9eb65727280e969ed4aa8ace8ca69b4a&search32=7RlaR6axlCI09BjIVWFrNA%3D%3DhKTcM5KRTRFSc8LxV3YLvBbZyN3BlqKPis8o5MzKVdcIqtm2vHVHrsOA8wjNXZkCjCzF7ZNJPWpEHXRzXAp49hftrT8-uPsKOe2iQLKAlfOGEV-J8aXStFjmXrl6mzgJVrMC3SfdBNwxCSUmJjk-4490apJxdVRcGpBp6kcruT-W4QhwhcVZtMa7JqFMWRexLwhG4nWswWd5AIAp8EJEIC8C0MMFLCtJfN_syHzjCxsf5SOKwWc6WqZ1P6PrtyQC_YHj-0GOrHn3nmAiMwhw2O6F5liu_n7SihdZoqLFfmz9nw5ljuO4s1N_EFoFRpUsGh8mrQjMiv_HwTyfl3SrEjSXFvDele9BbQE3jH4r6nb-wijBguun2JmBIZHOba3fgbj34HD52OUpnrLmfk6oUwmOhzeWToPMt2Mcu9JKDGMWvKv8jB1EwlBnATPKpfKU6eCTsyRd2mxlNdCkDqA%3D%3D, 검색일자: 2023. 1. 2.</p>
</div>
<div data-bbox=)

224) Ritter et al.(2022), pp. 26~27

- 징점 보고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디지털 자산 브로커의 신고내역을 교차검증할 수 있게 됨
 - 또한 브로커는 디지털자산을 다른 브로커에게 전송하거나 개인지갑 같은 브로커가 아닌 지갑 주소로 이전하는 거래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상기 보고의무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재무부와 국세청의 최종 규정(regulation)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제출의무가 유예됨
- IJJA는 이외 사업과정에서 1만달러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받은 사업체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임²²⁵⁾
- 내국세법 제6050I조는 사업자가 사업과정에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수수거래가 있는 경우 제공자 성명, 주소, TIN 및 수수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 디지털자산이 포함되도록 개정됨
 - 금액기준은 거래단위별로 적용하되 2개 이상의 연속된 거래²²⁶⁾의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함
- 가상화폐는 FinCEN에 대한 보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를 보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²²⁷⁾
- 미국 거주자는 미국 이외 국가에 보유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계좌를 FinCEN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 법령하에서 가상화폐는 보고대상에 포섭되지 않았음
 - FinCEN은 가상화폐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225) I.R.C. 6050I; Ritter et al.(2022), p. 27

226) 예를 들어 자동차를 9천달러에 판매하면서 조건으로 추가적인 1,500달러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금액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IRS,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 Motor Vehicle Dealership Q&A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cash-payments-over-10000-received-in-a-trade-or-business-motor-vehicle-dealership-qas>, 검색일자: 2023. 1. 12.)

227) FinCEN Notice 2020-2

- 재무부와 국세청은 국세청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보고(Form 8938)대상에 가상화폐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식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음²²⁸⁾, ²²⁹⁾, ²³⁰⁾
- 미국 개인납세자는 과세연도 말 기준 해외금융자산 총액이 5만달러(독신 기준) 또는 연중 한 번이라도 최고금액이 7만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함
- 미국 바이든 정부의 2022년 3월 예산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신고대상 자산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입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²³¹⁾

3. 일본

가. 가상자산 분류와 회계처리

- 일본은 암호자산²³²⁾을 「자금결제법」²³³⁾ 제2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

228) Federal Register 2014, 79 FR 73817 Reporting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229) Jim Calvin, "Portfolio 190-1st: Taxation of Cryptocurrencies, Bloomberg Law,"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B1RBH8?criteria_id=1e19dbe679e46231bf9d147855747b8b&navCriteriaId=bca2961254222d56db8ed4a09df502e7&searchGuid=0cb87dbd-3bf5-4159-9249-40021fb252fe&search32=y1Cgpi00scV2TenCL1oTAg%3D%3DF9vaMKRkGzvKRI2lleGzCOzAGxq25rXI17Ve7AdGRGZmV448alsFBSaVq5ocq4WdVZApIcCkvvBwa_-Gk2eBpZxTApTiAK1MnrweHpN-IVsUvaXB96KSQenlzuxfcDmDgmwPjSxZ_SDZMgC7j83rT2LM6MLBdvTGAnDmHRvy9z7gHqPm4Pd231mSY7IsXor_Q-95AVkeAk6sbB4_NkWI-3rgy6_olvh1AN-h-kQg3insu6Hey0EEEdzotUJv-J0TSdrXzNjUHMgkVdRwzpvorTUx3QF3ASG-6t3YPi7XhNhJGbyBczmda78NRbQF9cbP5uw0noPmilhzTDZldGQh93RoII Cv_7aQV89cN1ugRMDzuz0-WY147baZsC3zSgjq-1lFj4HCLCyl5VZ40yKVfSOMLIs7WBHn5vf1ydWbp5Uc_b4Uf5l-J-24oRr9q8R00wQfWu9LGnDAU9LK0BXj_oL1D4g3m0lQ8GLLZII-0_1ZjdPdNYIsyIjlUwvjs5BwBAbGkc9E_mES6OC5SfyBBgZeaKn35asQtOyJqRwjWg%3D, 검색일자: 2023. 1. 11.

230) Schwartz(2022), p. 786

231)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2), pp. 100~101

232) 2020년 5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명칭이 변경됨

233) 「자금결제법」은 상품권·선불카드 등의 금권이나 은행업 이외에 의한 자금이동업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로 2010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고 「선불식 지불 수단 발행」, 「은행 등 이외의 자가 행하는

는 것으로 정의함²³⁴⁾

- (i) 불특정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할 수 있음
- (ii)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이전할 수 있음
- (iii) 법정통화 또는 법정통화로 표시된 자산²³⁵⁾에 해당하지 않음

□ 「자금결제법」에 따른 암호자산은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하며 「금융상품거래법」상으로는 금전으로 간주함²³⁶⁾

- 「자금결제법」에 따른 암호자산에는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자기록이전권리(電子記録移転權利)를 표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²³⁷⁾
 - 전자기록이전권리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기타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는 것에 한함)에 표시되는 경우를 말함²³⁸⁾
 - 전자기록이전권리에 표시되는 권리는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간주 유가증권(みなし有価証券)에 해당하여야 함
 - 간주 유가증권 예시로는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등과 같은 집단투자펀드(集團投資スキーム持分)나 신탁수익권이 있음²³⁹⁾

외환 거래, 「암호자산의 교환 및 은행 등의 사이에서 생긴 외환 거래에 관련 채권 채무의 정산」을 규제대상으로 함

- 234)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의 원문 번역은 아래와 같음
이 법률에서 ‘암호자산’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단, 「금융상품거래법」(1947년 법률 제 25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자기록이전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물품을 구입하거나 차입하거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한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서 구입 및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및 그 밖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일본통화 및 외국통화 및 통화건자산을 제외한다.다음 호에서 동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2.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서 전후에 열거하는 것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 235) 「자금결제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일본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일본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채무의 이행, 환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행해질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자산을 의미함
- 236)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의2; 栗原克文(2021), p. 46
- 237)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단서규정
- 238) 다만 유통성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

- 일본기업회계에 따르면 「자금결제법」에 따른 암호자산을 기업회계상 자산(資産)으로 취급함²⁴⁰⁾
- 법률상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매매·환금(換金)을 통해 자금 획득에 공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계상 자산으로 취급함²⁴¹⁾
 - 암호자산은 외국 통화, 금융자산, 재고자산, 무형고정자산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자산의 회계처리가 필요함
 -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암호자산은 중앙은행 등의 뒷받침이 있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자산을 외국통화로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²⁴²⁾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암호자산은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회계기준²⁴³⁾상 금융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²⁴⁴⁾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암호자산은 트레이딩(トレーディング)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매매나 트레이딩 목적 외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므로 기업회계기준²⁴⁵⁾상 재고자산의 정의인 영업목적 달성을 위해 소유하고 매각을 예정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²⁴⁶⁾
 -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암호자산은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이전 가능한 무형의 가치를 지니므로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음²⁴⁷⁾

239) 법무법인 GAV professional Group, 「【弁護士解説】連載記事: STOの法務~第1回~」, <https://gvalaw.jp/blog/b20221025>, 검색일자 2023. 2. 15.

240) 実務対応報告第38号 「資金決済法における暗号資産の会計処理等に関する当面の取扱い」; 실무대응보고 제38호는 암호자산 교환업자와 암호자산 이용자가 보유한 암호자산(회사 자신 또는 관계사가 발행한 암호자산은 제외함)의 회계처리를 정함

241) 実務対応報告第38号 27

242) 実務対応報告第38号 29

243) 일본 금융상품실무지침 제4항: 현금,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의 권리,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다른 기업과 이러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할 계약상의 권리 또는 다른 기업의 주식 및 기타 출자증권

244) 実務対応報告第38号 30

245) 企業会計基準第9号 「棚卸資産の評価に関する会計基準」

246) 実務対応報告第38号 31

- 암호자산 이용자나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보유한 암호자산²⁴⁸⁾은 활발한 시장(活発な市場)의 존재 유무에 기말 회계처리를 달리함²⁴⁹⁾
 - 암호자산에 대한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²⁵⁰⁾ 시장가격에 기초한 가액으로 해당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기 손익으로 처리함
 -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차대조표가액은 암호자산 취득원가로 함
 - 기말 평가 시 암호자산의 처분 예측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처분 예측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취득원가와 해당 처분예측가액과의 차익은 당기 손실로 처리함
 - 암호자산 매각손익은 해당 암호자산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한 시점에서 인식함

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에 따라 암호자산은 지불·결제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는데 조세법도 과세목적상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암호자산을 차용함
 - 당초 암호자산 거래를 상품 거래로 보고 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 이후에 암호자산은 지불·결제 수단으로 보고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²⁵¹⁾
- 2017년 12월 개인 소득세 측면에서의 암호자산 과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이 공개된 이후 2019년 세제개정을 통해 보다 정비함²⁵²⁾

247) 実務対応報告第38号 32

248)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예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암호자산은 제외함

249) 実務対応報告第38号 5~13

250)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암호자산 교환업자 또는 암호자산 이용자가 보유한 암호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격정보가 제공되는 정도로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가상화폐 판매소에서 충분한 수량 그리고 빈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말함(実務対応報告第38号 8)

251) 일본 「소비세법」 별표 12호, 일본 「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신상화·홍성희·정훈(2018), p. 48

252) 일본 국세청은 소득세제 목적상 2017년 12월 가상통화에 관한 소득의 계산 방법 등(「仮想通貨に関する所得の計算方法等について(情報)」)과 2018년 11월 가상통화에 관한 세무상 취급(「仮想通貨

- 기존 일본 국세청이 공개한 암호자산에 대한 세무상 취급을 2019년 세제개정을 통해 법제화함²⁵³⁾
- 암호자산 거래 자체가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그 행위에 부수된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잡소득으로 처리함

다. 단계별 과세규정

1) 암호자산의 취득 및 보유단계

가) 블록체인 거래 합의에 따른 취득

- 마이닝(マイニング)이나 스테이킹(ステーキング)을 통하여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임²⁵⁴⁾
- 마이닝이나 스테이킹 등에 의해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암호자산의 취득시점 가액(시가)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마이닝 등에 소요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함
- 마이닝 관련 소득은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²⁵⁵⁾

나) 보유기간 중 이벤트에 의한 취득

- (하드포크 하드포크) 분열(분기)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암호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은 영(0)엔으로 하며,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인식하지 않음

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을 각각 공개하였고(가상통화는 이후 암호자산으로 변경됨), 후자에 대한 최근 개정은 2022년 12월에 있었음

253)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2019년 3월 27일과 3월 29일에 각각 성립, 공포되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4월 1일에 시행함. 소득세제는 기존 국세청의 공개문을 법제화하고, 법인세제는 2018년 일본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가 실무대응보고 제38호를 공표하여 회계상 처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암호자산 기말 평가 등을 법제화함. 2019년 4월 1일 이후 시행함

254) 일본 「소득세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255) 소득구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2) 암호자산의 처분단계' 편에서 설명함

- 분열(분기)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암호자산은 분열(분기)시점의 거래 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새로운 암호자산을 매각 또는 사용한 시점에 소득을 인식함²⁵⁶⁾

- (에어드랍エアドロップ) 에어드랍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암호자산에 대해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음
 - 에어드랍으로 새로 탄생한 암호자산의 가액(시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하드포크 또는 분열(분기)과 동일하게 취득시점이 아닌 매각 또는 사용시점에 소득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함²⁵⁷⁾

다) 가상자산의 대여

- 렌딩(レンディング)을 통하여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잡소득으로 과세함²⁵⁸⁾
 - 렌딩에 대한 대가로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암호자산의 취득시점 가액(시가)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렌딩 등에 소요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함

- 암호자산 교환업체²⁵⁹⁾를 통한 암호자산 증거금(証拠金) 거래²⁶⁰⁾ 또는 암호자산

256) 일본 「소득세법」 제36조

257) 村上裕一公認会計士事務所, 「仮想通貨の税金の仕組みをわかりやすく解説【税理士監修】」, <https://ur-buddy-cpa.com/blog/cryptocurrency/20210811181155-1368/>, 검색일자: 2023. 1. 10.; 税理士事務所century partners, <https://www.zeitetsuzuki.jp/16475172700752>, 검색일자: 2023. 1. 10.; 암호화폐 세금계산 플랫폼 Divly, <https://divly.com/ja/guides/cryptocurrency-tax-japan>, 검색일자: 2023. 2. 22.

258) 일본 「소득세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259) 암호자산 교환업체는 암호자산의 현물 매매 외 암호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수반하지 않는 차금결제(差金決済) 거래, 레버리지(バレッジ) 거래, 증거금(証拠金) 등을 제공함(林賢, 2020, p. 133)

260) 증거금 거래는 법정통화 또는 암호자산을 증거금으로 하여 레버리지(배율)를 설정한 후 암호자산 거래소로부터 증거금에 따라 암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증거금에 따른 레버리지 범위에서 거래를 함. 이때 암호자산 현물이 아닌 매각 또는 매입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고 차액을 결제함(セロス監査法人, 「暗号資産の証拠金取引で売却益がある場合」, 2022. 8. 28., <https://zelos.co.jp/crypt-margin-trading-tax>, 검색일자: 2023. 1. 10.)

신용거래²⁶¹⁾로 인한 소득은 그 거래의 결제일이 속하는 연도에 종합과세함²⁶²⁾

- 압호자산 증거금 거래는 금·곡물 등 원자재 선물 거래나 외화 증거금(FX) 거래와 같이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금융상품선물거래 등에 해당하지만 결손금의 이월공제 또는 단일세율의 적용 없이 종합과세함
 - 원자재 선물 거래나 FX 거래는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20.3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신고분리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특정 요건하에 3년간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됨²⁶³⁾
- 신용거래의 방법으로 압호자산을 매도(매수)한 후 동종의 압호자산을 매수(매도)하여 결제한 경우 소득금액은 압호자산 매도로 인해 통상적으로 얻어야 하는 대가액(매도가액)과 그 매수와 관련된 압호자산의 대가액(매수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함²⁶⁴⁾
 - 매도로 인해 통상적으로 얻어야 하는 대가액(매도가액)에는 매도자가 압호자산 교환업자로부터 수령한 금리는 포함하고, 압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지급하는 품대료²⁶⁵⁾는 공제함
 - 매수와 관련된 압호자산의 대가액(매수가액)에는 매수자가 압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매수가액에 포함하고, 압호자산 교환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품대료는 매수가액에서 공제함

261) 고객이 업자에게 보증금으로 금전이나 압호자산을 예탁하고 압호자산 교환업자가 지정한 배율을 상한으로 압호자산을 차입하여 압호자산을 매매·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함(林賢, 2020, p. 133; 「仮想通貨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2022) 2-13)

262) 일본 「소득세법」 제35조;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41의14조

263) 20.315%(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0.3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栗原克文, 2021, p. 44)

264)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7조, 所基通達 36·37 共-22; (「仮想通貨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2022) 2-13)

265) 신용거래에서 대주 잔액이 대출 잔액을 초과하여 주식부족이 발생한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그 부족주식수를 입찰형식으로 증권회사 또는 생손보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조달하는데, 그 입찰에 의해 결정된 요율을 품대료라고 함. 품대료가 붙은 종목에 대해 제도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매도고객은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또 모든 매수고객은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일본 도쿄증권거래소, 「用語集-品貸料(しながしりょう)」, <https://www.jpx.co.jp/glossary/sa/192.html>, 검색일자: 2023. 1. 10.)

2) 암호자산의 처분단계

- (소득구분) 암호자산을 매각하거나, 상품·용역의 대가로 암호자산을 지급하거나, 암호 자산 간 교환을 하는 경우와 같이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잡소득 (기타 잡소득)으로 구분함²⁶⁶⁾
 -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일본 엔화 또는 외화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인식 되는 손익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구분함²⁶⁷⁾
 - 수입시기는 매각 등을 위해 암호자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인식함
 - 다만 매각 등에 관한 계약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당해 과세연도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수입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고 암호 자산 거래와 관련한 장부서류를 보존한 경우²⁶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함²⁶⁹⁾
 -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수입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더라도 관련된 장부서류의 보존이 없는 경우에는 잡소득(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으로 구분함
 - 암호자산 거래가 사업소득 등의 기인이 되는 행위에 부수된 것인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구분함²⁷⁰⁾

- (필요경비)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함²⁷¹⁾

266) 일본 「소득세법」 제35조

267) 「仮想通貨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2022) 2-2

268)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 사회통념상 사업이라 칭하기에 이르는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정하는데, 수입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면서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장부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봄(国税庁, 「法第35条《雑所得》関係」,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04/09.htm>, 검색일자: 2023. 1. 10.)

269) 所得税基本通達 35-2 (業務に係る雑所得の例示) 35-2

270)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재고자산 등의 구입 결제수단으로 암호자산을 사용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仮想通貨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2022) 2-2)

271) 일본 「소득세법」 제37조, 제45조, 제48의2조;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 암호자산 매각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 잡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암호자산 양도원가(취득가액)²⁷²⁾ 및 기타 암호자산 매각 등에 있어서 직접 소요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회선 이용료나 컴퓨터 등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만일 사업소득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잡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양도원가(취득가액) 외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그 소득 창출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양도원가) 복수의 암호자산을 계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매각과 관련한 암호자산의 양도원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²⁷³⁾으로 평가하여 계산함²⁷⁴⁾
- 암호자산의 평가방법은 최초로 암호자산을 취득한 연도분의 확정신고기한(다음해 3월 15일)까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신고하여야 함
 - 무신고의 경우 암호자산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을 적용함²⁷⁵⁾
 - 한 번 채택한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3년간 적용함

272) 암호자산 취득가액은 취득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함(일본 「소득세법」 제36조, 제37조, 제40조)

-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구입)한 경우: 구입 시 지불한 대가액
-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 시 가액(시가)
- 상속인에 대한 사인 증여, 상속, 포괄 유증 또는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이 보유하는 암호자산 평가액
- 암호자산 간 교환, 채굴(마이닝 마이닝), 분열(분기) 등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의 가액(시가)

273) 총평균법은 같은 종류의 암호자산에 대해 연초 시점에 보유하는 암호자산의 평가액과 연중에 취득한 암호자산의 취득가액과의 합계액을 이들 암호자산의 총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연말시점의 1단위당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 이동평균법은 같은 종류의 암호자산에 대해 암호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가액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의 장부가 총액을 그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의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취득시점의 평균단가로 하고, 연말시점에 가장 가까운 날에 산출된 취득시점의 평균단가를 연말시점의 1단위당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仮想通貨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情報)」(2022) 2-4)

274) 일본 「소득세법」 제48조의2조;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2조

275)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3조; 제119조의5조

- 그러나 매각한 암호자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가액의 5%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추정함²⁷⁶⁾
- 잡소득으로 구분하는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에서 공제(통산)하거나 차기이월 공제할 수 없음²⁷⁷⁾
 -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암호자산 거래 손실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최대 3년까지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임²⁷⁸⁾
-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은 종합과세하며 5~45%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함²⁷⁹⁾
 - 공적연금 외 잡소득 2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적용을 배제함²⁸⁰⁾

3) 기타

- (국외재산조서 제출의무) 일본 거주자는 국외 자산 합계액이 5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는데, 암호자산도 신고대상 자산에 포함함²⁸¹⁾

276) 所基通達 48의2-4

277) 일본 「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 손실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금액 계산상 발생한 손실에 한함

278) 암호화폐 세금계산 플랫폼 Money Forward, <https://biz.moneyforward.com>

279) 일본 소득세 세율(일본 「소득세법」 제89조) (단위: 천엔,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1,949	5	9,000~17,999	33
1,950~3,299	10	18,000~39,999	40
3,300~6,949	20	40,000~	45
6,950~8,999	23	-	-

280) 일본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281) 일본 국세청, 「No.7456 国外財産調書の提出義務」,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tei/7456.htm>, 검색일자: 2023. 2. 15.

- 매년 12월 31일 기준 국외 자산 합계액이 5천만엔을 넘는 국내 거주자는 다음 해 3월 15일²⁸²⁾까지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대상 자산에는 암호자산 이외에도 동산, 부동산, 차지권 등, 예금, 보험금, 대출, 유가증권이 있음
 -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국외재산에 관한 소득세 등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를 5% 경감 조치함
- (재산채무조서 제출의무)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일본 개인납세자는 암호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²⁸³⁾
- 소득과 재산 수준이 다음과 같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개인 납세자는 재산과 채무를 국세청에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3월 15일²⁸⁴⁾까지 신고하여야 함
 - 소득세 등 확정신고한 소득금액(퇴직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2천만엔을 초과하고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3억엔 이상 또는 국외전출특례 대상재산²⁸⁵⁾ 합계액이 1억엔 이상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0억엔 이상인 경우(2023년 과세연도 이후부터)
 - 신고대상 자산에는 암호자산 이외에도 부동산, 예금, 비상장 유가증권, 대출금 등, 서화·미술공예품 등이 있음
 -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재산 및 채무에 관한 소득세 등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를 5% 경감 조치함
- (암호자산 교환업자 지급조서 제출의무)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하는 암호 자산 교환업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²⁸⁶⁾

282) 2023년 과세연도 이후 국외재산조서 제출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이 됨

283) 일본 국세청, 「No.7457 財産債務調書の提出義務」,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tei/7457.htm>, 검색일자: 2023. 2. 15.

284) 2023년 과세연도 이후 재산채무조서 제출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이 됨

285) 국외전출특례대상재산은 일본 「소득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미결제 신용거래 등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결제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권리

- 지급조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의 차금 등 결제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개인 번호
 - 차금 등 결제에 의해 성립한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의 차액 등을 결제함으로써 확정된 이익 금액의 합계 금액에서 손실 금액의 합계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의 차금 등 결제에 관한 거래의 수수료 등의 액의 합계 금액
 -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의 차금 등 결제를 한 자가 「국세 통칙법」 제11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납세 관리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 암호자산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4항 제3호에서 의하여, 「자금결제 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암호자산을 의미함

4. 영국

가. 가상자산 분류와 회계처리

- 영국은 법률로서 암호자산을 별도로 정한 바 없지만, 영국 정부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 문건을 통해 암호자산을 규정함

- 2018년 영국 암호자산 특별대책반²⁸⁷⁾의 최종 보고서(이하 2018년 최종보고서)와

286) 이룬 「소득세법」 제225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5; 일본 세무연구회, 「所得税法 施行規則 第90条の5 先物取引に関する支払調書」, <https://www.zeiken.co.jp/hourei/HHTOK000020/90-5.html>, 검색일자: 2023. 2. 15.

287) 영국 정부의 핀테크 부문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 3월 영국 재무부(HM Treasury),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금융감독기관(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공동으로 참여한 영국 암호 자산 특별대책반(Cryptoasset Taskforce)을 발표함.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속하는 암호자산과 분산원장기술(DLT)의 잠재적 위험이 영국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 서비스의 암호자산과 DTL에 대한 영국 정책과 규제안을 모색함(HM Treasury, FCA, Bank of England, 2018, p. 4) 2018년 10월 공개된 특별대책반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영국은 암호 자산 관련 금융서비스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2019년 영국 금융감독기관(FCA)의 정책성명서(이하 2019년 정책성명서)²⁸⁸⁾가 대표적인

- 이하 본문은 두 개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함

- 2018년 최종 보고서는 암호자산을 ‘일부 유형의 DLT를 사용하고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또는 매매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암호로 보호된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함²⁸⁹⁾
 - 암호자산이 환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암호자산을 통화(currency)나 화폐(money)로 간주하지 않음²⁹⁰⁾
- 2018년 최종 보고서는 광범위한 유형의 암호자산을 교환 토큰,²⁹¹⁾ 유틸리티 토큰,²⁹²⁾ 증권 토큰²⁹³⁾으로 분류하고 암호자산의 이용 유형을 교환 수단, 투자 수단, 초기 코인 오픈링(ICO)을 통한 자본조달 및 분산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수단으로 구분하여 금융 서비스 규제 여부를 검토함²⁹⁴⁾
- 2019년 정책성명서에서는 2018년 최종보고서의 암호자산 분류체계를 금융 서비스 규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증권 토큰, 전자화폐 토큰(이상 규제대상 토큰²⁹⁵⁾), 그리고

288) FCA(2019), p. 3; 2018년 암호자산특별대책반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FCA는 암호자산 유형별로 규제경계(regulation perimeter) 적용 여부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하고 정책성명서를 통해 최종 지침을 2019년 7월에 공개함(FCA, 2019, p. 4)

289) HM Treasury, FCA, Bank of England(2018), p. 11

290) HM Treasury, FCA, Bank of England(2018), p. 11

291) 교환 토큰(exchange token)은 상품과 서비스 매매목적으로 전통적 중재자 없이 DLT 플랫폼을 사용하고 주로 교환 또는 투자 수단으로 이용되며, 중앙은행 또는 기타 중앙 당국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금융 서비스 규제 경계 밖에 있는 것으로 봄

292)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DLT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며 일부 토큰이 전자화폐(E-money)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행위는 규제받을 수 있음

293) 증권 토큰(security token)은 소유권, 특정 금전의 상환 또는 미래 이익의 몫에 대한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제공하며 금융서비스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2000) 규제대상행위규정(RAO)의 적용을 받는 특정 투자상품에 해당하고, EU의 금융상품시장 지침 II(MiFID II)에 따른 양도성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

294) HM Treasury, FCA, and Bank of England(2018), p. 11; FCA(2019), p. 4

비규제대상 토큰으로 재분류함

- 증권 토큰은 규제대상행위규정(Regulated Activities Order, RAO)에 따른 특정 투자상품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토큰을 의미하며 MIFID II에 따른 금융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²⁹⁶⁾
 - 전자화폐형 토큰은 전자화폐규정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으로 당초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의 범주에 속하는 일부 토큰을 전자화폐형 토큰으로 재분류함²⁹⁷⁾
 - 비규제대상 토큰(unregulated token)은 전자화폐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RAO에 따른 특정 투자상품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모든 토큰을 말함 - 2018년 최종 보고서 분류체계상 교환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은 비규제대상 토큰으로 보고 재분류함
- 영국 IFRS나 일반회계기준(GAAP)은 암호자산 회계처리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 없지만, 영국공인회계사협회(ICAEW)에서 재무제표보고기준(FRS 102) 목적으로 잠재적인 암호화폐 회계처리를 제안하는 문건을 발표한 바 있음²⁹⁸⁾
- ICAEW은 암호자산 회계처리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보유하는 암호자산의 의도된 용도를 토대로 고려하여야 하며,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봄²⁹⁹⁾

295) 규제대상 토큰이란 금융서비스시장법과 전자화폐규정에 따라 FCA의 규제를 받는 토큰을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증권 토큰과 전자화폐형 토큰으로 구분함(FAC, 2019, p. 60)

296) 증권 토큰은 전통적 투자상품인 지분주식(shares), 채권(debentures), 집합투자기구의 단위지분(uni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의 특성과 같거나 유사하게 보고 금융서비스 규제 경계안에 속하기 때문에 증권 토큰이 결부된 특정 행위는 관련 규제를 적용함

297) 여기서 전자화폐규정에 따른 요건은 i) 전자적으로 저장된 금전적인 가치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할 것 ii) 지급(결제)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 수령 이후 발생할 것 iii) 발행자 이외의 제삼자도 수락함 iv) 전자화폐규정에서 별도로 적용배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019년 정책성명서는 온라인 지갑(online wallet)이나 선불카드(prepaid cards)에 들어있는 법정화폐 충전금도 전자화폐형 토큰의 범주에 포함함. 법정화폐에 고정되고(pegged), 법정화폐로 일대일(1:1)로 보증하여 가치가 안정화된 일부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은 전자화폐의 정의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 전자화폐형 토큰은 규제경계 범위에 속하므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음

298) ICAEW, "Accounting for cryptocurrencies under FRS 102," <https://www.icaew.com/technical/tas-helpsheets/financial-reporting/cryptocurrencies-under-frs-102>, 검색일자: 2023. 2. 9.

- 암호자산은 FRS 102에 따른 현금(cash)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정화폐 (legal tender)로 볼 수 없음
- 암호자산은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대가로 이용되지만 현금이나 금전청구권이 아니고 FRS 102의 금융투자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금융투자상품 (financial instrument)에 해당하지 않음
- 암호자산 거래가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경우 암호자산은 재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음
- 매매목적으로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암호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거래소에서 매각 또는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며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³⁰⁰⁾

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 영국은 암호자산 거래를 과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현재까지 별도로 입법한 바 없음
 - 다만 영국 과세당국(HMRC)은 암호자산 거래 과세를 위한 내부지침³⁰¹⁾을 공개하여 현행 세법을 토대로 암호자산 거래 과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소개하고 있음
 - HMRC 내부지침은 2018년 영국 암호자산 특별대책반의 최종보고서와 ICAEW 암호자산 회계처리 제안을 토대로 암호자산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으로 보임
- 이하 본문은 HMRC 내부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암호자산의 조세법상 분류와 암호 자산 거래에 대한 영국의 과세를 서술함

299) Green, Gary, "Cryptocurrencies And Accounting Treatment," Key Business Consultants, <https://www.keybusinessconsultants.co.uk/accountants/cryptocurrencies-and-accounting-treatment>, 검색일자: 2023. 2. 9.

300) 암호자산 시장(active market)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정가액 평가함(FRS 102, Section 18)

301) HMRC, "HMRC internal manual-Cryptoassets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 검색일자: 2023. 2. 9.; 2018년 12월에 공개한 Cryptoassets: tax for individuals와 2019년 11월 공개한 Cryptoassets: tax for businesses를 포함한 내부 지침이고 2022년 11월 현재 DeFi에 대한 과세방안을 포함함

- (암호자산의 정의) HMRC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거래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계약상 권리에 대한 암호화된 보안 디지털 표시로 정의함³⁰²⁾
 - HMRC는 2018년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입장을 반영하여 암호자산을 화폐(currency)나 금전(money)으로 취급하지 않음³⁰³⁾
 -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목적으로 암호자산은 무형자산(incorporeal property)으로 처리함
 - i) 소유할 수 있고 ii) 그 가치는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산의 특성을 전제로 함

- (암호자산의 유형) HMRC는 암호자산을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하지만, 과세처리는 토큰 특성과 용도에 따라 결정함
 - 교환 토큰: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잠재적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투자 수단으로도 이용됨
 - 유틸리티 토큰: 일반적으로 DLT 플랫폼의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권한을 보유자에게 제공하고 교환 토큰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환 또는 P2P(peer-to-peer) 방식의 거래를 통해 매매할 수 있음
 - 증권 토큰: 소유권, 특정 금액의 상환, 미래 이익의 몫에 대한 권리와 같은 특정 권리나 지분을 소유자에게 제공함
 - 스테이블코인: 법정통화 또는 귀금속과 같은 안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에 고정하여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암호자산임

다. 단계별 과세규정

- 개인 납세자가 수행하는 암호자산 거래는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음³⁰⁴⁾

302) HMRC(2021), CRYPTO10100

303) HMRC(2021), CRYPTO22550

- 개인 납세자의 암호자산 거래가 사업(trade)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소득세를 자본이득세에 우선하여 적용함

1) 암호자산의 취득 및 보유단계

가) 블록체인 거래 합의에 따른 취득

- 채굴(mining) 활동 또는 스테이킹(staking) 활동으로 수령한 암호자산은 사업(trade) 목적상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사업성 여부는 활동 수준, 조직화, 위험, 상업성 등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함
- 채굴이나 스테이킹 활동이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채굴 또는 스테이킹 활동으로 수령한 암호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의 공제, 이자비용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 항목의 소득에 한해 상계를 허용하며, 결손금은 4년간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³⁰⁵⁾
- 관련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 1천파운드의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³⁰⁶⁾
 - 관련 소득에서 표준공제를 차감하는 경우 관련 소득의 필요경비는 공제할 수 없음
- 개인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0%(기본세율), 40%(고세율), 45%(추가세율)의 세율을 적용함³⁰⁷⁾

304) HMRC(2021), CRYPTO20050

305) HMRC, "HMRC internal manual-Cryptoassets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00190>, 검색일자: 2023. 2. 9.

306) HMRC, "HMRC internal manual-Business Income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86000>, 검색일자: 2023. 2. 9.

307) HMRC, "Income Tax rates and Personal Allowances," <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3. 2. 10.

○ 소득세 면세구간은 1만 2,570파운드임

나) 보유기간 중 이벤트에 의한 취득

□ (하드포크) 분기로 인해 새로 발생한 암호자산을 개인 납세자가 수령하는 경우 과세 소득을 인식하지 않음

○ 하드포크로 수령하는 새로운 암호자산의 취득가액은 원본 토큰의 취득가액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a just and reasonable basis)으로 배분함³⁰⁸⁾

- 암호자산 거래소는 하드포크로 인한 새로운 토큰의 인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새로운 토큰을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공제 가능한 모든 비용은 원본 토큰에 할당함

□ (에어드랍) 에어드랍의 결과, 개인 납세자가 수령하는 토큰은 대가성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음³⁰⁹⁾

○ 수령한 토큰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나 기타 조건 등의 대가성이 없어야 하고, 사업 목적의 일환이 아니어야 함

- 만일 에어드랍된 토큰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구분	과세표준 구간	세율
Personal Allowance	~ £12,570	0%
Basic rate	£12,571 이상 £50,270 미만	20%
Higher rate	£50,271 이상 £150,000 미만	40%
Additional rate	£150,000 이상	45%

2023년 4월부터 추가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은 15만파운드에서 12만 5,140파운드로 하향 조정 예정임(HMRC, <https://www.gov.uk/government/news/autumn-finance-bill-2022-published>, 검색일자: 2023. 2. 10.)

308) section 43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Act(TCGA) 1992; HMRC,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2300>, 검색일자: 2023. 2. 9.

309) HMRC, "HMRC internal manual-Cryptoassets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1250>, 검색일자: 2023. 2. 9.

다) 가상자산의 대여³¹⁰⁾

- 디파이 렌딩과 스테이킹 활동으로 개인 납세자(대여자 또는 유동성 공급자)³¹¹⁾가 수령하는 대가를 이자(interest)로 보지 않음³¹²⁾
 - 세법상 이자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지만, 판례법상으로는 이자를 타인에게 속해 있는 금전이나 타인에게 빌린 금전을 사용·보유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반환금(return) 또는 보상(compensation)으로 규정함
 - HMRC는 암호자산을 화폐나 금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디파이를 통해 수령한 대가를 이자로 보지 않음

- 대여자/유동성 공급자가 암호자산을 빌려주거나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서 스테이킹 하는 대가로 보상(return)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자본 이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보상금(return)이 수익(revenue)의 성격을 갖는지 또는 자본(capital)의 성격을 갖는 지에 따라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달리 적용함³¹³⁾
 - 보상금이 수익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대여자/유동성 공급자가 차입자/디파이 대출 플랫폼에 (대여)용역을 제공하여 획득하는 보상금

310) 이하 본문은 렌딩과 유동성 공급 관련 영국 개인 납세자 과세를 다루고 있음. HMRC는 2022년 7월자로 암호자산의 렌딩과 유동성 공급을 현행 자본이득세 적용 배제하는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거래(Repo)나 주식대차거래(stock lending)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HMRC, "Consultation outcome-The taxation of Decentralised Finance involving the lending and staking of cryptoassets-call for evidence,"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all-for-evidence-the-taxation-of-decentralised-finance-involving-the-lending-and-staking-of-cryptoassets/the-taxation-of-decentralised-finance-involving-the-lending-and-staking-of-cryptoassets-call-for-evidence>, 검색일자: 2023. 2. 15.), 그러나 2023년 2월 현재까지 전문가 의견에 대한 HMRC의 입장을 공개한 바 없음

311) Lending의 경우 Lender, staking의 경우 liquidity provider를 의미함

312) HMRC(2021), CRYPTO61110

313) HMRC(2021), CRYPTO61214

- 계약 체결 당시 연간 일정 수익률로 대여자/유동성 공급자가 수령할 보상금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
- 보상금이 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계약 체결 당시 수익률을 사전에 알 수 없고 해당 활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인 경우

(1) 소득세

- 렌딩과 스테이킹 활동으로 수령한 보상금(return)이 수익의 성격을 갖고 해당 렌딩과 스테이킹 거래가 사업의 일환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³¹⁴⁾
- 기타소득 과세는 대여자/유동성 공급자가 수령하는 보상금에 한해 적용하며, 원금 상환은 자본 거래로 처리함³¹⁵⁾
- 예시³¹⁶⁾
 - A는 보유하는 토큰 100개(총원가 200파운드)를 B에게 12개월 동안 대여하고 기간 종료 시 연 5% 수익률을 약정하여 대출시점에 약정기간과 수익률을 확정함
 - B가 토큰을 상환할 때 A가 연 5%의 수익률로 수령하는 토큰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함
 - 대여자 A가 B에게 토큰을 이전할 때와 차입자 B가 A에게 토큰을 상환할 때 각각 자본 거래로 취득하여 자본이득세를 적용함

(2) 자본이득세

(가) 암호자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 디파이 렌딩과 스테이킹 활동을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거래(Repo)나 주식대차

314) Section 687-689 ITTOIA 2005

315) HMRC(2021), CRYPTO61213

316) HMRC(2021), CRYPTO61672

거래(stock lending)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지 않음³¹⁷⁾

- 암호자산이 자본이득세법상 유가증권³¹⁸⁾의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 렌딩과 스테이킹은 환매조건부 거래 또는 주식대차거래로 처리함
- HMRC는 암호자산이 유가증권의 정의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문제로 보고 있으며, 암호자산 대부분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봄

(나) 그 외 경우

- 대여자/유동성 공급자의 암호자산을 차입자(borrower)/디파이 대출 플랫폼으로 이전할 때 해당 암호자산의 수익적 소유권 역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³¹⁹⁾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³²⁰⁾
- 렌딩과 스테이킹으로 암호자산의 수익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각 단계별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자본이득세를 적용할 수 있음

317) 환매조건부 거래(Repo)는 s263A(1) 규정에 따라 유가 증권 처분이 아닌 대출로 취급하여 상대방이 원래 소유자에게 지불한 수익을 이자로 과세함. 주식대차는 s263B(2) 규정에 따라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으로 보지 않고 보지 않음(HMRC, "Consultation outcome-The taxation of Decentralised Finance involving the lending and staking of cryptoassets - call for evidence,"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all-for-evidence-the-taxation-of-decentralised-finance-involving-the-lending-and-staking-of-cryptoassets/the-taxation-of-decentralised-finance-involving-the-lending-and-staking-of-cryptoassets-call-for-evidence#_ftn1, 검색일자: 2023. 2. 10.)

318) Section 263AA(8) TCGA 1992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정의는 다음과 같음

- (a) 회사(거주 여부 관계없이) 주식
- (b) 아래의 주식 또는 다른 유가증권의 대부분
 - (i) 영국 정부
 - (ii) 영국의 지방 당국
 - (iii) 영국 공공기관
 - (iv) 영국 거주하는 회사 또는 기타 단체
- (c) 아래가 발행한 지분, 대부증권 loan stock, 주식, 다른 증권 stock
 - (i) 영국 이외 지역의 정부, 지방당국, 기타 공공기관 또는
 - (ii)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또 다른 집단

319) 암호자산을 수령한 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수령한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수령인이 해당 토큰의 실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강력한 지표가 될 것임

320) HMRC(2021), CRYPTO61620

- 대여자/유동성 공급자가 암호자산을 넘겨줄 때와 다시 암호자산과 보상금(return)을 되돌려받을 때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이 있는 것으로 봄
- 차입자(borrower)가 암호자산을 차입한 후 다시 대여자에게 암호자산과 보상금을 되돌려 줄 때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이 있는 것으로 봄³²¹⁾
 - 차입자가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 담보(collateral)를 제공할 때 해당 담보의 수익적 소유권이 실제 이전했다고 보는 경우 담보 제공의 행위 역시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으로 봄

대여자(lender)의 처분

- 대여자가 일정 기간 이후 일정 수량의 토큰을 받을 권리(a future quantity of tokens)를 위해 암호자산을 넘겨줄 때 처분이 이루어짐
- ‘미래 일정 수량의 토큰을 받을 권리’는 무형자산 중 이연 대가(deferred consideration)로 보고, 미래 수령할 암호자산의 수량이 확정된 경우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리 자본이득세를 적용함
- (이연 대가가 확정된 경우) 대여자는 대출시점에 미래 수령 예정인 암호자산의 총 수량(원본과 보상금)을 영국 파운드화 가치로 평가하여 처분가액을 계산함³²²⁾
 - 미래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체 금액은 처분가액에 포함하여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이후 실제 수령시점에는 과세하지 않음
 - 수령시점에 보상금을 과세하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아닌 소득세를 적용함³²³⁾
- (이연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여자는 대출시점에 넘겨준 암호자산의 수량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 가치로 평가하여 처분가액을 계산함

321) HMRC(2021), CRYPTO61640

322) Section 48(1) TCGA 1992

323) Section 37 TCGA 1992

- 대여자는 자본이득세 목적상 확정되지 않은 이연 대가를 받을 권리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함³²⁴⁾
 - 이러한 권리를 ‘Marren v Ingles 권리’라고 하고 미래 수령시점에 가치로 평가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함³²⁵⁾
- 대출 상환의 경우 대출 당시 본래 처분에 대한 과세처리에 따라 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달리함
 - 미래 수령할 암호자산의 수량을 확정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
 - 대출 상환으로 대여자가 수령하는 암호자산은 미래 수량의 암호자산을 받을 권리에서 파생한 자본금(capital sum)으로 보고 처분으로 처리함³²⁶⁾
 - 미래 수량을 받을 권리의 취득원가는 대여자의 대출 방식(by way of the loan being made)으로 자본이득 계산에 포함한 영국 스텔링 평가액이 될 것임
 - 미래 수령할 암호자산의 수량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
 - 최초 처분 시 미래 수량을 불확실한 것으로 처리할 때 대여자는 Marren v Ingles 권리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함
 - 차입자의 대출 상환으로 대여자가 수령한 암호자산은 Marren v Ingles 권리로 부터 파생한 자본으로 보고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으로 처리함³²⁷⁾

324) 자산이 처분되었고 그 처분 대가의 일부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확정되지 않은 해당 부분은 무형 자산인 권리의 취득으로 처리함. 향후 추가 대가를 수령한 경우 무형자산인 권리의 처분가액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를 적용함(HMRC, “HMRC internal manual-Capital Gains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2080>, 검색일자: 2023. 2. 10.)

325) 영국 상원 판결 Marren v Ingles (54 TC 76)사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Marren v Ingles 권리라고 칭함. Marren v Ingles 사건에서 이연 대가와 관련하여 확립된 원칙은 아래와 같음(HMRC, “HMRC internal manual-Capital Gains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4990>, 검색일자: 2023. 2. 10.)

1. 미래 불확실한 지급금을 수령할 권리는 ‘무체동산(chose in action)’으로 자본이득세 목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인 ‘무형자산(an incorporeal asset)’에 해당함
2. 미래 수령액이 확정된 경우 TCGA92/S22에 따라 ‘자산에서 파생된 자본액(capital sums derived from assets)’에 해당함
3. 미래 수령액은 TCGA92/S251의 요건 내에서 채무 상환으로 인한 지불금에 해당하지 않음

326) Section 22(1) TCGA 1992; HMRC(2021), CRYPTO61650

327) Section 22(1) TCGA 1992

- 확정되지 않은 이연 대가에 대한 특정 권리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초 해당 권리가 부여된 자산의 처분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을 전제로 하여 소급공제를 허용함³²⁸⁾

□ 예시(대여-이연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³²⁹⁾

- 20XX년 4월 15일 A는 보유하는 토큰 1천개(총원가 500파운드)를 B에게 기한 확정 없이 대여하고 상환 시 연간 5% 수익률을 약정함(대출시점 토큰 1개당 시가 1파운드)
- 수익률은 5%로 정해졌으나 대여 기한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Marren v Ingles 권리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권리의 시가는 100파운드로 추정함
- 20X3년 4월 14일 B는 1,150개의 토큰을 A에게 상환함(상환시점 토큰 1개당 시가는 0.85파운드)
- 암호자산의 대여시점과 상환시점에 인식하는 소득 산정은 아래와 같음
 - 대여시점

A의 자본이득 계산

처분가액-①	$1,000 \times \text{£}1.00 + \text{£}100(\text{권리의 시가})$	= $\text{£}1,100$
취득원가-②	$1,000 \times \text{£}0.5$	= (500)
처분차익(=①-②)		600

- 상환시점

A의 자본이득 계산

처분가액-①	$1,000 \times \text{£}0.85$	= $\text{£}850$
취득원가-②	$1,000 \times \text{£}1.00$	= $(1,000)$
처분차익(=①-②)		(150)

328) 다만 TCGA92/S279A에서 TCGA92/S279D 섹션의 모든 관련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함(HMRC, "HMRC internal manual-Capital Gains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5080>, 검색일자: 2023. 2. 10.)

329) HMRC(2021), CRYPTO61679

A의 'Marren v Ingles 권리' 처분

처분가액-①	$150 \times \pounds 0.85 - 150 \times \pounds 0.85$ (소득세과세)	= 0
취득원가-②	'Marren v Ingles 권리'의 가치	= (100)
처분차익(=①-②)		(100)

- 상환시점 A가 수령하는 150개 토큰(127.50파운드)은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의 처분

- 유동성 공급자가 하나 이상의 암호자산 통제권을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디파이 대출 플랫폼으로부터 암호자산 통제권을 수령한 경우 자본이득세 목적의 처분으로 봄
 - 이전한 암호자산 처분가액은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서 수령한 토큰의 시가(영국 스텔링 평가액)임
 - 새로 수령한 암호자산의 취득가액은 이전한 암호자산의 시가로 평가함
- 유동성 공급자가 디파이 대출 플랫폼의 유동성 풀에서 스테이킹한 암호자산(staked token)을 인출하는 경우 암호자산의 교환으로 보고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으로 처리함³³⁰⁾

차입자(borrower)의 처분

-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서 암호자산을 차입하는 경우, 자본이득세 목적상 암호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함
 - 해당 암호자산의 취득원가는 미래 기간 차입자가 대여자(대출기관)에 넘겨야 하는 일정 수량의 토큰을 하는 의무의 가치로 평가함³³¹⁾

330) HMRC(2021), CRYPTO61650

331) Chaney v Watkis(58 TC 707)

- 차입자에게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 담보(collateral) 제공 의무가 부여된 경우 수익적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으로 볼 수 있음³³²⁾
 - 디파이 대출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지만, 담보 제공으로 넘겨준 암호자산의 수익적 소유권을 실제 이전한 경우 처분으로 보아 자본이득세를 적용함
 - 이때 처분가액은 담보로 제공한 암호자산의 시가(영국 스타링 평가액)이고 산정함
 - 담보가 인출되면 암호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는 수령시점의 시가(영국 스타링 평가액)임

- 차입자의 대출 상황(satisfaction of a DeFi loan)은 암호자산의 수익적 소유권을 대여자(대출기관)에 이전하는 것으로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으로 처리함³³³⁾

2) 암호자산의 처분단계

- 개인 납세자가 암호자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³³⁴⁾
 - 영국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disposal)은 i) 암호자산과 금전의 교환 ii) 암호자산을 다른 유형의 토큰으로 교환 iii)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급을 위해 암호자산을 사용 iv) 타인(배우자 등 제외)에게 암호자산의 증여 등을 포함한 개념임
 - 거래 전반에 걸쳐 암호자산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유지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음
 - 암호자산 프라이빗 키(private key) 분실은 처분으로 보지 않음
 - 프라이빗 키의 복구 또는 암호자산의 접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음³³⁵⁾

332) HMRC(2021), CRYPTO61640

333) 상황은 차입자가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차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여자(대출기관)에 암호자산을 전송하거나, 유동성 공급자가 DeFi 대출 플랫폼의 유동성 풀에서 지분토큰(staked token)을 인출하는 것을 의미함(HMRC, 2021, CRYPTO61650)

334) HMRC(2021), CRYPTO22100

- (공제비용) 개인 납세자가 암호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의 예시적 유형은 다음과 같음^{336), 337)}
 - 암호자산 취득원가
 - 채굴 활동으로 발생하는 장비나 전기 등 비용은 암호자산을 독점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 이득세 목적상 공제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³³⁸⁾
 - 분산 원장에 거래를 포함하기 위해 지불한 거래 수수료
 -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위한 광고비
 - 암호자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계약 관련 전문 비용
 - 손익 계산을 위한 평가 또는 배분 관련 비용

- 암호자산 취득원가는 이동평균법 또는 개별법의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함
 - 각각 암호자산이 개별적으로 식별하지 않고 거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의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를 적용함³³⁹⁾
 - ‘section 104 pool’이라는 별도 비고 계정을 통해 취득 및 처분 거래 건별로 수량과 단가를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계산함
 -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s, NFT)과 같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함
 - 동일 종류의 암호자산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취득원가 계산에 대한 특례로 같은 날 규정과 30일 규정을 적용함
 - 같은 날 규정(same day rule): 같은 날 특정 유형의 암호자산을 취득 및 처분 거래를 수차례 수행하는 경우 모든 거래를 단일 거래로 취급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함

335) 멸실가치적용(negligible value claim)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암호자산의 손실을 실현할 수 있음 (HMRC, 2021, CRYPTO22400)

336) Section 38 of TCGA 1992; HMRC(2021), CRYPTO22150

337) 소득세 과세 당시 공제된 비용은 자본이득세 목적상 공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음(TCGA92/S37)

338) 다만 소득세 목적상 채굴 활동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339) TCGA92/S104(3)(ii); 주식 등 유가증권 및 처분하거나 취득한 특정자산을 식별하지 않고 거래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기타자산의 취득원가 계산 시 적용함

- 30일 규정(30days rule): 암호자산 처분 이후 30일 이내 동일한 유형의 암호 자산을 동일한 용량으로 획득한 경우 같은 날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선입선출 법의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함
- 자본이득세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취득원가 등 공제비용 이외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함
 -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을 고려하여 1만 2,300파운드의 소득공제(annual exempt amount)를 적용할 수 있음
 - 소득공제는 2023년 4월부터 6천파운드를 적용하고, 2024년 4월부터는 3천 파운드로 하향 조정할 예정임³⁴⁰⁾
 - 이월 결손금은 최대 4년³⁴¹⁾간 공제가 허용됨
- 암호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적용세율은 10%, 20%임³⁴²⁾
 - 소득세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이 적용되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함
 - 소득세 기본세율(20%)이 적용되는 납세자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10%, 20%의 세율을 적용함
 - 기본세율 납세자인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과 자본이득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기본세율 적용구간인 1만 2,571파운드 이상 5만 270파운드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함

340) HMRC, "Policy paper-Autumn Statement 2022 HTM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statement-2022-documents/autumn-statement-2022-html>, 검색일자: 2023. 2. 10.

341) 1996년 4월 5일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기간의 제한 없음(HMRC, "Capital Gains Tax: what you pay it on, rates and allowances," <https://www.gov.uk/capital-gains-tax/work-out-need-to-pay>, 검색일자: 2023. 2. 10.)

342) HMRC, "Capital Gains Tax: what you pay it on, rates and allowances," <https://www.gov.uk/capital-gains-tax/work-out-need-to-pay>, 검색일자: 2023. 2. 10.

3) 기타

-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신고 이외 HMRC를 대상으로 암호자산 거래 관련 정보에 대한 영국 개인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확인하지 못함

- 암호자산 거래소 등이 HMRC를 대상으로 영국 거주자의 암호자산 거래 신고의무를 확인하지 못함

V. 국제비교와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국제 동향

- 가상자산의 유형과 특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체계를 일관되면서 일률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렇지만 OECD와 EU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 설계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함
 - OECD는 암호자산의 조세 목적상 보고체계(CARF)를 마련하여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사 절차 준수 및 암호자산 거래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임
 - EU는 암호자산 관련 법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암호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EU 회원국 간 조세 목적상 암호자산 정보교환을 위한 지침을 마련함
 -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암호자산 거래를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체계로 포섭하고 (DLT 시범 운영 규칙)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복원을 위한 규제(Dora)를 마련함
 - 동시에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 법적 규제를 마련함(MiCA)
 - EU 회원국 간 조세 목적상 암호자산 정보교환을 위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실사 절차 준수 의무와 암호자산 거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함 (DAC8)

- 한편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 수, 생활밀접도 측면에서 가장 성숙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디지털자산 거래를 기존 제도로 포섭하여 내부적으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OECD와 EU는 공통적으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및 유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치(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암호자산을 정의함
 - OECD는 암호화한 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를 검증하고 보호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내림³⁴³⁾
 - EU는 “분산원장기술 또는 유사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함³⁴⁴⁾
 - 한편 OECD와 EU의 규제 목적에 차이가 있어 암호자산 유형 분류에서 차이를 보임
 - OECD는 주로 지급결제 기능과 투자 기능에 초점을 두고 암호자산 유형을 정함
 - EU는 암호자산의 기능을 지급결제 기능, 투자기능, 자본조달 기능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산 유형을 정하고 있음³⁴⁵⁾

나. 가상자산의 분류와 회계처리

-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 및 유형을 규정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규제기관의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규정함
 -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제정한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 및 유형을 규정함

343) 원문은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relies on a cryptographically secured distributed ledger or a similar technology to validate and secure transactions”임(OECD, 2022a, p. 19)

344) 원문은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or rights which may be transferred and stored electronically,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or similar technology”임(MiCA 제3조)

345) EU는 자산준거 토큰, 전자화폐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으로 분류하고 앞의 세 개 유형은 MiCA를 적용하고 나머지 한 개 유형(증권 토큰)은 금융서비스 규제를 적용할 예정임

-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
-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의 범위에는 유틸리티 토큰이나 전자화폐 토큰 등 일정한 특성이나 기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함
-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지급(결제)기능 또는 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교환 토큰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임
- 미국은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정부기관별 규제 목적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함
- 일본은 은행업 이외 자금이동업의 지급결제를 규제하기 위한 「자금결제법」에서 암호자산을 정의함
 - 암호자산은 전자적으로 기록·이전할 수 있으면서 불특정인에 대해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함
 - 암호자산 범위에서 일본 통화 및 외국 법정통화는 제외됨을 명시함
- 영국은 2018년 영국 암호자산 특별대책반의 최종보고서와 2019년 영국 금융감독 기관(FCA)의 정책성명서를 바탕으로 암호자산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암호자산을 분산장부기술(DLT)을 사용하고 전자적으로 전송·저장·매매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보안을 위해 암호화한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함
 - 암호자산 유형을 2018년 최종보고서에서는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으로 구분한 바 있지만, 2019년 정책성명서는 금융서비스 규제의 적용 목적으로 규제토큰(증권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과 비규제토큰(교환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분함
 -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로 간주하지 않음

〈표 V-1〉 주요국의 가상자산 분류(근거 법률)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근거 법률	특금법	법률제정 없음 ¹⁾	「자금결제법」	법률제정 없음 ²⁾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	전자적으로 기록·이전 가능, 대금 지급 등 사용·법정통화와 교환 가능한 재산적 가치	DLT 기반, 전자적 전송·저장·매매할 수 있는 가치·권리의 디지털 표현
유형	유틸리티 토큰, 전자화폐, 게임물 이용 결과물, 전자등록주식 등 제외	-	법정통화·법정통화 표시 자산, 「금융상품거래법」 전자기록이전권리를 표시한 것 제외	규제토큰(증권 토큰, 전자화폐 토큰) 비규제토큰 (교환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주: 1) 미국은 정부기관별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임

2) 2018년 영국 암호자산 특별대책반의 최종보고서와 2019년 영국 금융감독기관(FCA)의 정책성명서를 토대로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회계처리) 가상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상 자산(assets)으로 공통적으로 처리하지만 자산 분류나 시가평가 여부 등은 조사대상 국별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이 관할당국·제3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함

- 통상적 영업활동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그 외의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시가평가하지 않음

-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나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음

○ 미국은 미국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청구권이 없는 디지털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할 예정임

○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따른 암호자산을 일본기업회계에 따른 자산으로 회계처리함

- 현행 일본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외화 통화, 금융자산, 재고자산, 무형고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 자산으로 회계처리함
- 활발한 시장이 있는 경우 암호자산은 시가평가하여야 함
- 영국은 암호자산 회계처리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 없지만, 재무보고 목적으로 영국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제안한 임시 회계처리(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를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보임
 -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암호자산은 재고자산으로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 평가할 수 있음
 - 암호자산은 현금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표 V-2〉 주요국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³⁾
가상자산 ¹⁾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디지털자산	「자금결제법」에 따른 암호자산	교환, 지급결제, 투자 목적의 암호자산
자산성 인정 여부	자산성 인정	자산성 인정	자산성 인정	자산성 인정
자산분류	재고자산 ²⁾ 무형자산	무형자산	별도 자산	재고자산 ²⁾ 무형자산
자산 평가	원가주의	공정가치 평가(예정)	공정가치 평가	공정가치 평가

주: 1) 조사대상국은 주로 교환, 지급결제, 투자기능이 있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증권형 토큰이나 전자화폐형 토큰은 그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

2)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 그 외 무형자산으로 분류함

3) 영국 IFRS나 GAAP은 정한 바 없고 영국공인회계사협회(ICAEW)에서 재무보고(FRS102)목적상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 한국과 일본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법률로서 별도 규정을 마련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기존 소득세제(또는 자본이득세) 내에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함
 - 한국은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며 조세법상 무형자산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보도자료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보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법률로서 별도 규정하지 않고 과세당국의 해석이나 지침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세 과세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과세목적상 자산(property)으로 봄
 - 과세목적상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유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법정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갖거나 법정화폐의 대체 역할을 하는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나 결제토큰을 이에 포함함
 - 다만 현행 소득세 과세목적상 유틸리티 토큰이나 증권형 토큰은 디지털자산 과세지침의 범주에서 제외함
 - 일본은 조세법상 암호자산을 「자금결제법」에 따른 암호자산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등 개정을 통해 별도 규정을 입법하여 암호자산 거래 관련 소득을 과세함
 - 암호자산의 자산성은 인정하지만 기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임
 - 영국은 암호자산 거래를 과세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입법한 바가 없고 과세당국(HMRC)의 내부(행정)지침을 공개함
 -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전송·저장·거래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계약상 권리의 디지털 표시로 정의하고 자본이득세 목적상 무형자산(incorporeal property)으로 처리함
 - 2018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암호자산을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하지만, 유형에 관계없이 암호자산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과세함

- 공통적으로 조사대상국의 현행 가상자산 소득과세 규정은 교환, 지급결제, 투자목적
으로 이용하는 가상자산만을 적용대상으로 함
 - 한국, 미국, 일본은 증권 토큰(security token)이나 유틸리티 토큰 등은 현행 가
상자산 소득과세 규정으로 포섭하지 않음
 - 영국은 암호자산을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큰 특성이나 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표 V-3〉 주요국의 조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처리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근거 법률 유무	「소득세법」 개정	법률 제·개정 없이 과세당국 해석·지침으로 과세	「소득세법」 개정	법률 제·개정 없이 과세당국의 내부행정지침 공개를 통해 과세
과세대상 가상자산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	DLT 등 기반으로 한 가치의 디지털 표현인 디지털자산	「자금결제법」에 따른 암호자산	DLT 등 기반, 전자적 전송·저장·거래할 수 있는 가치·계약상 권리의 디지털 표시
조세법상 자산분류	무형자산	자산(property) ¹⁾	기타 자산	무형자산
현행 소득과세 적용배제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 전자화폐, 게임물 이용 결과물, 전자등록주식 등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자금결제법」에서 포함하지 않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전자기록이전권리	암호자산 파생거래, 증권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은 적용 배제하지만 실질과세 가능

주: 1) 미국은 디지털자산은 자산(property)으로 처리하지만 자산의 분류를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조사대상국은 유가증권의 금융거래와 유사한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특례적인
금융상품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렌딩이나 유동성 제공 등과 같은 디파이 거래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거래에 대해 조사대상국은 금융상품 과세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과세규정을 적용함
 -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은 유가증권 대차거래 또는 유가증권 환매조건부 거래차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함
- 그러나 금융거래와 유사한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현행 과세 규정의 개정 요구가 미국과 영국에서 관찰됨
 - 미국 바이든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렌딩과 유동성 공급을 기존 유가증권 대차거래와 유사한 거래로 보고 현행 내국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토대로 2022년 3월 디지털자산 대차거래의 비과세를 제안한 바 있음
 - 영국 HMRC는 2022년 디파이 거래 관련 소득의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의 적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라. 단계별 과세제도

1) 가상자산의 취득 및 보유단계

- 조사대상국(한국 제외)은 가상자산의 채굴이나 스테이킹 보상으로 개인 납세자가 수령하는 암호자산을 취득시점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우리나라는 채굴이나 스테이킹 보상으로 개인 납세자가 수령하는 가상자산의 과세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대여 및 양도로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지만,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 여부를 규정한 바 없음
 - 다만 가상자산 채굴을 사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미국은 암호자산 채굴의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그 외 상금 등으로 분류하여 취득시점에 과세하지만, 스테이킹 보상의 경우 과세시기와 소득유형은 불분명함

- 스테이킹 보상으로 수령한 암호자산은 당초 취득시점에 과세하였지만, 과세시기 (취득 또는 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국세청 간 조세분쟁 이후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일본과 영국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소득과 잡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 (하드포크와 에어드랍) 가상자산 보유기간 중 하드포크나 에어드랍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취득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미국은 취득 당시 공정가액으로 과세하나 일본과 영국은 처분시점에 과세함
 - 우리나라는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을 통해 개인 납세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가상 자산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있음
 - 미국은 하드포크를 통해 개인 납세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디지털자산은 취득 당시 공정가치를 경상소득으로 하여 과세함
 -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에어드랍으로 취득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바는 없으나 하드포크와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견해가 있음
 - 일본은 하드포크의 결과 무상으로 취득하는 암호자산은 취득시점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 없으나 시가가 없는 경우 하드포크의 경우와 유사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임
 - 신규로 취득하는 암호자산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처리하고 암호자산을 매각 또는 사용하는 시점에 소득 과세함
 - 영국은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의 결과 무상으로 취득하는 암호자산은 취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과세함
 - 하드포크 결과로 취득하는 암호자산의 취득가액을 원본 토큰의 취득가액에 배분한 후 처분 당시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에어드랍의 경우 대가성이나 사업목적의 없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음

〈표 V-4〉 주요국의 가상자산 취득단계 소득세 과세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채굴로 취득	불분명 ¹⁾	사업소득 또는 총소득 포함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스테이킹 보상	불분명 ¹⁾	불분명 ³⁾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하드포크	과세 대상 아님 ²⁾	경상소득	과세 안 함 ⁵⁾	과세 안 함 ⁶⁾
에어드랍	과세 대상 아님 ²⁾	경상소득 ⁴⁾	불분명 ⁵⁾	과세 안 함 ⁶⁾

- 주: 1) 우리나라는 채굴로 취득하거나 스테이킹 보상으로 수령한 암호자산에 대해 취득 당시 암호자산의 과세 여부는 명시하지 않음. 다만 사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 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2) 우리나라는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을 통해 수령한 암호자산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음
 3) 미국은 스테이킹 보상으로 수령한 암호자산을 취득시점에 과세하였으나 조세분쟁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한 바 없음
 4) 미국은 에어드랍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바 없지만, 하드포크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견해가 있음
 5) 일본은 하드포크로 새로 발생한 암호자산은 처분시점에 과세한다고 규정하지만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 없음. 다만 취득 당시 시가가 없는 경우 하드포크와 유사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6) 영국은 하드포크로 취득한 암호자산을 취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과세함. 에어드랍의 경우 대가성 또는 사업목적 없는 경우 한해 취득 시 과세하지 않음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가상자산의 대여

- 조사대상국 모두 디파이 플랫폼을 통한 가상자산의 활용과 관련한 소득 과세 규정은 별도로 법제화하지 않고 기존 과세 규정의 해석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영국 HMRC는 디파이 플랫폼을 통한 렌딩과 유동성 공급 관련 과세규정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부 행정 지침을 최근 공개한 바 있음
 - 동시에 HMRC의 견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차후 HMRC의 과세 입장이 변경될 여지도 있음
- 일본 「소득세법」은 렌딩이나 일부 암호자산 파생거래에 대한 과세 규정은 두고 있지만 다른 디파이 활동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조사대상국 대부분은 대여 활동의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나 경상소득으로 종합 과세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대여 활동 과정에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간 교환에 대해서는 영국만 자본이득세 과세를 고려함
- 우리나라는 렌딩, 유동성 공급, 위임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의 이용활동을 대여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임
 - 대여인 경우 대여 결과 수령하는 보상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반면, 양도(가상자산 간 교환)인 경우 수입금액이나 양도차익의 결정에 대한 지침은 부재함
- 미국 과세당국은 렌딩, 유동성 공급, 위임 스테이킹 관련 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공개한 바 없음
 - 렌딩과 유동성 공급과 그 대가로 수령한 보상을 디지털자산 원본의 가치변동분과 과실로 구분하여 각각 자본소득과 수동적 소득(이자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는 존재함
 - 위임 스테이킹으로 수령하는 보상은 수동적 소득으로 과세함
- 일본은 렌딩을 통해 수령한 암호자산은 취득시점 잡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유동성 공급이나 위임 스테이킹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 없음
 - 암호자산 증거금 거래나 암호자산 신용거래(암호자산 파생거래)는 원자재 선물 거래나 FX거래와 유사하지만 단일세율의 신고분리과세가 아닌 잡소득으로 종합 과세함
- 영국은 렌딩이나 유동성 공급을 암호자산과 다른 암호자산 간의 교환으로 보고 대여자 대여와 차입자의 상환(또는 유동성 공급자의 유동성 공급과 디파이 플랫폼의 암호자산 인출) 단계별로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
 - 렌딩이나 유동성 공급의 대가가 사전에 일정 수익률이나 고정액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암호자산 원본의 가치변동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본자산으로 처리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표 V-5〉 주요국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소득세(자본이득세) 과세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관련 규정	현행 「소득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함 ¹⁾	공식 견해 없음	현행 「소득세법」에서 렌딩이나 암호자산 파생거래(차익거래)에 대한 과세규정 마련함	디파이 플랫폼을 통한 렌딩·유동성 공급 관련 내부행정지침 마련함
렌딩	기타소득	디지털자산간 교환은 자본소득 과세, 렌딩 대가의 대가는 수동적 소득 과세함	잡소득	사전확정된 대가는 소득세, 원본 간 교환은 처분으로 보고 자본이득 과세함 ²⁾ (대여 및 상환 시)
유동성 공급	기타소득	상동	규정 없음	처분으로 보고 자본이득 과세 ²⁾ (제공 및 인출 시)
위임 스테이킹	기타소득	수동적 소득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가상자산 파생거래 (차익거래)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잡소득	규정 없음

주: 1) 우리나라는 대여 및 양도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므로 디파이 플랫폼을 통한 렌딩, 유동성 공급, 위임 스테이킹 모두 현행 「소득세법」으로 포착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처분으로 처리하는 경우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규정이 새로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영국은 렌딩 및 유동성 공급을 모두 암호자산 간 교환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다만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 그 부분은 소득세 과세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권리의 취득으로 보고 처분 시 과세함

자료: 본문 제Ⅵ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가상자산의 처분

□ 미국과 영국은 사업목적이 없는 가상자산의 처분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고 다른 자산의 처분에 대한 기존 자본과세 범주 내에서 동일하게 과세처리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러하지 않음

○ 미국과 영국은 현행 자본소득 과세규정에서 다른 자본손실과 소득과의 상계나 결손금 차기 이월공제를 암호자산 처분에도 적용함

- 다른 자산의 자본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암호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과 합산하여 손실상계나 결손금 공제를 적용함
- 우리나라와 일본은 암호자산 관련 소득 모두를 기타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다른 소득에서 상계하거나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조사대상국 대부분은 가상자산 매각, 가상자산 간 교환,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가상화폐 지급을 과세목적상 처분으로 보고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함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의 사업목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을 처분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기타소득의 경우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이후 암호자산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분리하여 20%의 세율로 과세함
 - 사업목적 없는 암호자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한 결손금은 차기로 이월하거나 다른 소득에서 상계 처리할 수 없음
- 미국은 디지털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가상화폐 지급, 디지털자산 간의 교환을 모두 처분으로 보고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과세함
 -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함
 -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1년 이하 보유 시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1년 초과 보유의 경우(독신 기준, 2022년 기준) 4만 1,676~45만 9,750달러까지는 15%의 세율,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함
 - 다른 자산의 자본소득과세 범주 내에서 디지털자산의 자본이득을 초과하는 자본손실은 최대 3천달러까지 경상소득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 순자본손실은 차기로 이월공제할 수 있음
- 일본은 암호자산 매각,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암호자산 지급, 암호자산 간 교환을 처분으로 보고 잡소득으로 과세함
 - 잡소득으로 구분하는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통산하거나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

- 다만 암호자산 수입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면서 관련 장부서류를 보존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암호자산 처분손실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최대 3년까지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할 수 있음
- 잡소득이나 사업소득 모두 종합과세하며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영국은 암호자산과 금전의 교환, 암호자산 간 교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암호자산 지급, 타인(배우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 암호자산의 증여를 처분으로 처리하여 자본이득세로 분류 과세함
 -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을 고려하여 1만 2,300파운드(2023년 4월부터 6천파운드)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결손금은 최대 4년까지 차기로 이월 공제할 수 있음
 - 소득세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20%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 기본세율(20%)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과세표준 구간별 10%, 20%의 세율을 적용함³⁴⁶⁾

346) 소득세 과세표준과 자본이득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구간별로 10%(1만 2,571파운드 이상 5만 270파운드 미만), 20%(초과)의 세율을 적용함

〈표 V-6〉 주요국의 가상자산 처분 과세(사업목적 없는 경우)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처분 범주 ⁶⁾	① 가상자산과 법정 화폐의 교환 ② 가상자산 간 교환	① 가상자산과 법정 화폐의 교환 ② 재화-용역 대가로 가상화폐 지급 ③ 가상자산 간 교환	① 암호자산 매각 ② 상품-용역 대가로 암호자산 지급 ③ 암호자산 간 교환	① 암호자산과 금전의 교환 ② 암호자산 간 교환 ③ 재화-용역 대가로 암호자산 지급 ④ 타인(배우자 등 제외)에게 암호 자산 증여
적용 세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자본이득세법」
소득분류	기타소득	자본소득	잡소득	자본소득
처분 손실과 다른 소득 상계	다른 소득과 손실 상계 허용 안 함	순자본손실금액 3천달러까지 경상소득 공제 가능 ¹⁾	다른 소득과의 손실 상계 허용 안 함	해당 사항 없음 ²⁾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안 함	기한 없이 이월공제 ¹⁾	허용 안 함	최대 4년 결손금 이월 공제 ²⁾
종합과세 여부	분리과세의 방식으로 종합신고 ³⁾	분류 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⁵⁾
세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기간 1년 이하: 일반세율 보유기간 1년 초과(독신 기준): 과세표준 41,676 ~459,750달러 15%, 초과분은 20% 	5~45%의 누진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고세율(40%)· 추가세율(45%) 적용 납세자: 20% 소득세기본세율(20%) 적용 납세자: 과세표준 구간별 10%, 20%⁴⁾

주: 1) 미국은 현행 자본소득세제 범주 내에서 암호자산 처분을 규제하고 있는데,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과 암호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합산한 후 순자본손실금액과 결손금을 산정함. 부부 별도신고는 손실상계는 1,500달러를 한도로 함

2) 영국은 별도 세목인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므로 경상소득과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다른 자산의 자본손익과 암호자산 처분손익을 합산한 후 결손금을 산정함

3)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처분으로 인한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방식으로 신고함

4) 영국은 소득세기본세율(20%) 적용 납세자의 자본이득세 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자본이득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구간별로 10%(1만 2,571파운드 이상 5만 270파운드 미만), 20%(초과)의 세율을 적용함

5) 영국은 소득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별도 세목을 적용함

6) 우리나라는 다른 조사대상국과 달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상화폐의 지급을 법 규정상 처분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에 대한 기존 과세실무와 사법상 해석을 통해 처분으로 포섭될 것으로 이해함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 일정액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 별도의 면세 또는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기존 자본과세 범주 내에서 면세규정을 둠
 - 우리나라는 사업목적이 없는 가상자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한 순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함
 - 미국은 1년 초과하여 보유한 디지털자산과 다른 자산의 순자본소득금액 기준 4만 1,675달러(2022년 기준)까지 비과세함
 - 일본은 공적연금 이외의 잡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적용을 배제함
 - 영국은 암호자산과 다른 자산의 자본소득이 1만 2,300파운드(2023년 4월부터 6천 파운드) 미만인 경우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과 자본이득세 과세표준의 합산액이 1만 2,571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표 V-7〉 주요국의 가상자산 처분 과세(면세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가상자산 소득만 판단	양도 및 대여의 순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	-	-	-
다른 소득 합산 후 판단	-	보유기간 1년 초과 순자본소득금액 41,675달러 이하	공적연금 이외 잡소득 20만엔 이하	자본소득 합계액 12,300파운드 미만 ¹⁾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과 자본이득세 과세표준의 합산액 12,571파운드 미만

주: 1) 영국은 2023년 4월부터 면세점을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과 암호자산 자본이득의 합계액 6천파운드 미만으로 하향 조정함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조사대상국 대부분은 암호자산 거래에 관여하는 거래소 등 제3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미국은 암호자산 지급에 있어서 납세자식별번호(TIN)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 예비적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2024년 이후 중개업자에 대한 고객의 디지털자산 거래내역 보고의무가 시행되면 중개업자의 예비적 원천징수도 시행될 예정임

2. 시사점

가. 가상자산 취득시점 과세규정의 명확화

- 비사업적 채굴이나 (직접)스테이킹 보상을 통해 취득하거나, 하드포크 또는 에어드랍의 방식을 통해 무상 취득한 가상자산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은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원시 취득에 대해 정한 바 없음
 - 보유한 가상자산의 대여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다루고 있지만,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비사업적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과세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지만 2025년 이후 신규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음
- 가상자산의 신규 취득에 대해 취득시점에 과세하거나 또는 처분시점에 과세하는 경우 신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규정이 필요함
-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 현행 「소득세법」은 비사업적 채굴로 인한 가상자산 신규 취득의 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처분시점 과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취득가액 산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제는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영(0)으로 비고 처리하였다가 처분시점에 소득 전부를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옴
 - OECD에 따르면 비사업적인 채굴활동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은 취득시점에 과세하거나 처분시점에 과세할 수 있는데 미국,³⁴⁷⁾ 일본, 영국은 모두 취득시점에 기타소득이나 잡소득으로 과세함
 -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게 될 여지가 있는데 취득 후 단기간 내 처분하는 경우 처분시점 과세와 차이가 없음
 - 다만 시가가 있는 가상자산 취득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시가하락기에 처분할 때는 과세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만일 취득시점 과세를 채택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상 과세대상 가상자산소득 범위에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 외 취득으로 인한 소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하드포크) 기존 분산원장에 보관하는 가상자산 외 신규 생성된 분산원장에 있는 신규 가상자산의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산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ECD에 따르면 하드포크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처분시점 과세를 채택함
 - 대부분 국가는 유동성 문제와 자본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하드포크로 인한 신규 가상자산은 처분시점 과세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임
 - 취득시점 과세를 채택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제상 과세대상 가상자산소득 범위에 '취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처분시점 과세를 채택한 경우 하드포크로 신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에어드랍) 마케팅 이벤트 일환으로 배포하는 가상자산의 신규 취득에 대해 현행 소득세제는 과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개인 납세자가 수령하는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산정규정이 필요함

347) 미국은 직접 스테이킹 보상의 경우 취득시점 과세를 하였다가 처분시점 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자와의 조세분쟁 이후 공식 입장을 공개한 바 없음. 납세자와의 조세분쟁은 취득시점 과세 당시 부과한 세액의 환급을 약정하여 종료함

- 취득시점 과세는 대가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신규 가상 자산의 시가가 형성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으로 보아 취득시점 과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가성은 있지만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로 배포하는 에어드랍에 대해 취득시점 과세를 채택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OECD 또는 조사대상국(영국 제외)이 에어드랍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는데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신규 가상자산은 시가가 없고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처분시점 과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일본은 하드포크 경우와 달리 에어드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하드포크 경우와 같이 처분시점 과세처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 영국은 내부 지침을 통해 대가성 없는 에어드랍 취득 가상자산은 처분시점 과세함

나. 가상자산 대여 시 과세방법의 명확화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 자산 대여의 성격이 있는 주요 디파이 거래 시의 과세방법이 불명확함
- 가상자산을 현금등가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타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음
 -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2020년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마련 이후 증가하고 있는 렌딩, 유동성풀 공급 거래는 대여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양도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바, 해당 거래의 과세방법이 불분명함
 -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여자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제공하고 증표 또는 담보목적의 새로운 토큰을 수령함. 이후 거래 종료시점에는 증표 토큰을

반환하고 기존 제공한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수취함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를 과세대상 양도거래로 보고 있으므로 (i) 가상자산의 대여시점과 (ii) 상환받는 시점에 과세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현금등가물 등과 유사하게 활용하는 경우

- 가상자산을 현금등가물 등과 유사하게 활용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은 이를 무형 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타방에게 가상자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래의 대가는 이자소득과 구분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금전의 사용대가를 말하며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닌 별도의 무형자산에 해당되는바 가상자산을 소유권 이전 없이 타방이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예시로는 소유권의 이전 없이 위임 이외 별도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위임 스테이킹이 있는데 금전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

2) 렌딩과 유동성풀 공급거래로 활용하는 경우

- 렌딩과 유동성풀 공급거래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은 대여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민사법에서는 임대차를 소유권의 이전 없이 타방에게 물건 등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봄³⁴⁸⁾
 - 「소득세법」상 양도란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임³⁴⁹⁾

348) 「민법」 제618조

349)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자산의 이전 여부는 소유권의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세법」은 소유권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으나 민법상 소유권이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처분 권을 말함³⁵⁰⁾
- 대표적 디파이 거래인 렌딩, 유동성풀 공급 등은 타방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가상 자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도로 발생하지만(대여 목적) 대여·상환 시점에 가상 자산의 교환거래가 있어(양도 거래) 과세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렌딩 등의 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으로는 (i) 렌딩 대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과 (ii) 렌딩 대가와 가상자산 교환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음
 - 전자는 렌딩을 가상자산 대여로 보아 가상자산 원본의 가치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렌딩 대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임
 - 후자는 렌딩을 대여와 양도가 혼합한 거래로 보고 렌딩 대가 자체는 대여소득으로 과세하고, 가상자산의 대여·상환 시점 원본의 시가차익에 대해서는 각각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임
 - 영국 국세청의 과세지침과 동일한 방법이며 미국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보임
- 렌딩 등의 대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납세순응도 제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음
 -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를 양도로 보고 있는바, 렌딩 등에 대해서 양도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가상자산 간 교환의 범위 정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
 - 그러나 디파이는 대다수의 조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납세자의 거래의도와 세무처리가 일치하게 되어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임

350) 「민법」 제211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 가상자산 및 디파이 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세원 포착 및 납세의무 준수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세거래 단순화를 통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렌딩 등의 대가는 대여소득으로 과세하고, 대여·상환 시의 시가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은 현행 법조문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과세실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이고,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적 실질에 입각하여 주식 대차 거래를 양도거래로 해석한 대법원의 견해와 일치하는 장점이 있음³⁵¹⁾
 - 다만 거래의도와 상이한 납세결과 발생 및 유동성 측면의 애로사항에 기인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음
 - 영국은 우리보다 자본이득과세의 범위가 넓어 렌딩 거래의 세무처리에 대한 납세자 수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가상자산의 순수 양도거래 과세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렌딩거래의 대여·상환 시점마다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합산하여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대여·상환 시점의 시가차익 과세효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다.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의 과세구분

-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대상국의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은 교환 토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행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규정은 교환 토큰을 대상으로 하며 증권형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 등은 각각의 성질에 맞추어 기존 제도하에서 규율될 것으로 생각됨

35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오종문(2021), pp. 154~158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토큰증권(즉 증권형 토큰)과 그 외의 토큰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므로 토큰증권 역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밝힘
- 조세법상으로도 관련 법령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증권에 적용되는 기존의 과세지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교환 토큰은 지급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투자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격 변동성이 상당하고 거래가 빈번하므로 신종 금융상품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 가상자산소득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세율 및 과세방식에서 유사하지만 손익통산, 기본공제금액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금융투자자산 내에서도 과세처리가 상이한 점이 있고 가상자산 거래가 금융투자자산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지는 않은 점, 관련 시장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금융투자소득세 내에서도 유형별 소득공제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의 투자 유인을 동등하게 하여야 할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 및 제반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 차원의 논의대상으로 생각됨

-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등 금융투자자산 내에서도 정책목적에 따라 과세처리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제로 포섭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 대여 소득은 구분 과세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시장이 미성숙하고 기존 금융투자자산과는 달리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납세순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요국의 경우에도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투자자산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은 위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함

-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을 큰 틀에서는 동일하게 과세하지만, 이는 두 유형의 자산을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과세체계가 모든 자본자산(예: 부동산, 주식 등)을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과세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견지에서 미국과 영국은 증권의 대차거래는 비과세하지만, 가상자산의 대여거래에 대해서는 이와 구분하여 대여·상환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이 증권과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지만 가상자산과 증권을 구분하여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본은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저율의 분리과세, 파생상품은 상장주식 등과 세율은 동일하나 잡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³⁵²⁾ 가상자산은 잡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함

라.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도입

- 현행 소득세제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의 적용을 배제하는데,³⁵³⁾ 가상자산이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소득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가상자산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있고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이미 원천징수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여한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가상자산계좌가 있는 개인납세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곧 시행할 예정임

352) 이상엽 외(2020), p. 57

353) 「소득세법」 제127조 6호 다목

- 비거주자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³⁵⁴⁾
-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여한 가상자산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예비적으로 분리 과세한다면 소액 납세자 납세협력의무를 경감할 수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여한 가상자산소득은 누진세율이 아닌 2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현행과 같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한 가상자산소득 신고방식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를 가중함
 - 그러므로 가상자산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상자산소득의 순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한 신고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마.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와의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재화·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의 지급으로 분류할 수 있음
 - OECD 2020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처분의 범위를 유형화하였고, 조사대상국은 OECD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처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현행 가상자산소득세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화·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넘겨주는 경우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준하여 양도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금전)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을 가상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로 규정하고 있음³⁵⁵⁾

354)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16항

- 그런데 재화·용역에 대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상자산의 처분을 현행 가상 자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의 조세저항, 납세협력의무 과중, 세정실무상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두고 있는 국가³⁵⁶⁾와 같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무한 것도 아님
 - 가상자산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일상화되면 소비행위를 하는 개인 대부분을 가상자산소득세제에 포섭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투자목적 없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음
 - 현행 가상자산소득세제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는 과세연도 중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투자목적 없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처분한 개인 납세자에게 과중한 조세협력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확보 및 차익거래의 평가 등으로 세정 실무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OECD는 비사업적이고 소규모 거래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화·용역의 지급결제에 대해 납세순응도 제고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미국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가상자산 소액 결제로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2025년 가상자산소득세제 시행 전 비사업적이고 소규모 거래를 대상으로 면세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조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355)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356)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한경금융』, 「비트코인이 그저 자산?...그 나라들이 법정화폐로 고른이유 [한경 코알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85281i>, 검색일자: 2023. 2. 24.; 코인데스크코리아, 「브라질 의회, 암호화폐 결제 허용 법안 승인」,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54>, 검색일자: 2023. 2. 24.)

- 최소과세기준(거래 횟수, 소득금액, 수량 기준)을 두어 지급결제 수단으로 가상 자산의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협력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가상자산소득세제는 면세점(250만원)을 두고 있지만, 이 경우 과세연도별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의 누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비사업적이고 일상적인 지급결제로 인한 가상자산소득의 산정은 납세자의 조세협력부담을 가중할 수 있음

VI. 결론

- 본 연구는 2020년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도입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됨에 따라 2025년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비할 사항을 검토하였음
- OECD와 EU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 설계를 위한 국제적 합의는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OECD의 CARF와 EU의 가상자산 인프라 규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예정함
 - OECD와 EU는 공통적으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및 유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치(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암호자산을 정의하면서 규제 목적에 따라 암호자산 유형을 달리 정함
 - OECD는 주로 지급결제기능과 투자기능에 초점을 두고 암호자산 유형을 정함
 - EU는 암호자산의 기능을 지급결제 기능, 투자기능, 자본조달 기능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산 유형을 정하고 있음
 - EU와 영국은 지급기능과 투자기능을 가진 암호자산과 자금조달기능을 가진 암호자산(증권형 토큰)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 금융서비스 규제를 적용할 예정임
- 현행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제를 토대로 가상자산과 다양한 디파이 거래를 고려한 과세 지침을 준비한 국가는 영국이 있음
 - 일본은 소득세제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구비하였으나, 디파이 거래 모두를 고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현행 소득세제의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고 있으나, 납세자와의

마찰이 관찰되고 신규 디파이 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개하지
않음

- 조사대상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공통으로 지급결제 및 투자기능을 가진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유가증권의 금융거래와 유사한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특례적인 금융상품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신규 도입하는 증권형 토큰은 금융 인프라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금융투자세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보임

- 국제동향과 조사대상국의 과세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 가상자산소득 과세규정에 대한 주요 정비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현행 소득세제는 채굴, 직접 스테이킹 보상,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가상자산의 신규 취득에 대해 정한 바 없는데 신규 가상자산의 과세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취득가액 산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파이 거래는 형식상 대여라도 가상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 양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세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상자산의 투자기능이 부각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유사성을 내세워 금융투자세제를 적용하자는 견해는 가상자산 인프라 규제를 마무리한 이후 고려할 사항으로 보임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을 재화와 용역 대가에 대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때도 현행 가상자산소득세제가 적용하는데 비사업적이고 소규모 거래에 대해 조세순응도 제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0.
- 관계기관 합동, 「별첨 1.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 보도자료, 2017. 9.
- 김갑래,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이슈보고서 21-13, 자본시장연구원, 2021.
- 김재진·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 2022.
- 김흥기,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상자산시장의 규제방안」, 『상사법연구』, 제4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5., pp. 1~50.
-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023. 2. 6.
-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 신상화·홍성희·정훈,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오문성·김경하·최세훈·유승규·이태규, 『2022 가상자산 세무 실무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 오종문, 「공매도와 대차거래 손익의 과세」,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1 조세 전문가 네트워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이용준, 「유가증권 대차거래제도」, 『월간상장』, 2009년 8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9, pp. 108~111.
- 이준호·표철민·전명산·정수호·한대훈·한중섭,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 이혜정·김정환·서용성,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 임종철·유현경·곽지영·김선미, 「블록체인과 합의 알고리즘」,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3권 제1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8, pp. 45~56.
- 최정희,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통권 제72호), 이화여자대학교, 2020, pp. 65~98.
- 코인게코, 『세상에 없던 금융, 디파이 입문편』, 2022a. 2.
- _____, 『세상에 없던 금융, 디파이 심화편』, 2022b. 6.
- 한국은행,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2022. 12.
- Harvey, Campbell R., Ashwin Ramachandran, and Joey Santoro(송교직·안성필·이동엽 역), 『디파이와 금융의 미래』, 2022.
- Avi-Yonah, Reuven, and Mohanad Slaimi, “A new framework for taxing cryptocurrencies,” University of Michigan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22-014,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2022. 3. 31.
- Bains, Parma, Arif Ismail, Fabiana Melo, and Nobuyasu Sugimoto, *Regulating the Crypto Ecosystem_The Case of Unbacked Crypto Assets. FINTECH Note/2022/007*, IMF, 2022. 9.
- CoinGecko, *2022 Annual Crypto Industry Report*, 2023.
- Cong, Lin William, Wayne Landsman, Edward Maydew and Daniel Rabetti, “TAX-LOSS HARVESTING WITH CRYPTOCURRENCIES,” Working Paper 30716, NBER, 2022. 12.
- CRS, *How the Lummis - 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S. 4356) Would Alter the Crypto Regulatory Landscape*, 2022. 7.
-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23 Revenue Proposals*, 2022. 3.
- FATF, *The FATF Recommendations*, Updated March 2022.
- FCA, *Guidance on Cryptoassets_Feedback and Final Guidance to CP 19/3, PS19/22*, 2019. 7.
- FSB, *Assessment of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from Crypto - assets*, 2022.

- GAO, Virtual Currencies - Additional information reporting and clarified guidance could improve tax compliance, 2020.
- Green, Gary, "Cryptocurrencies And Accounting Treatment," Key Business Consultants, <https://www.keybusinessconsultants.co.uk/accountants/cryptocurrencies-and-accounting-treatment>, 검색일자: 2023. 2. 9.
- HM Treasury, FCA, and Bank of England, *Cryptoassets Taskforce: final report*, 2018. 10.,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52070/cryptoassets_taskforce_final_report_final_web.pdf., 검색일자: 2023. 2. 7.
- HMRC, *HMRC Internal manual Cryptoassets Manual*, 2021,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 검색일자: 2023. 2. 9.
- Hoflmayer, M., *Markets in crypto - assets (MiCA)*, EPRS, 2022,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9221/EPRS_BRI\(2022\)739221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2/739221/EPRS_BRI(2022)739221_EN.pdf), 검색일자: 2023. 1. 18.
- IOSCO, *Decentralized finance report_Public Reports*, 2022. 3.
- IRS, *Tax year 2022 1040(and 1040 - SR) Instructions*, 2022. 12. 23.
- Makarov, Igor and Antoinette Schoar, "Cryptocurrencies and decentralized finance(DEFI)," Working Paper 30006, NBER, 2022. 4.
- NYSBA(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Tax section), *Report on cryptocurrency and other fungible digital assets*, Report No. 1461, 2022. 4.
-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10.
- _____, *Why Decentralised Finance (DeFi) Matter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2022a. 1.
- _____, *Crypto - 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ments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2b. 10.
- Parsons, Amanda, "Cryptocurrency, legibility, and taxation," *Duke Law Journal Online*, 72, 2022. 10., pp. 1~20.

PWC, *Annual Global Crypto Tax Report 2022*, 2022.

Ritter, K. Peter and Joshua S. Tompkins, “Proof of Stake - What’s Really at Stake on the Tax Front?,” *Journal of taxation of financial products*, 19(1), KPMG, 2022, pp. 26~48.

Ritter, Pete, Nelson Suit, Joshua S. Tompkins, and Hubert Raglan, “Year-End Tax Considerations for Cryptocurrency Investors,” *Journal of taxation of financial products*, 19(3), KPMG, 2022, pp. 19~30.

Roukny, Tarik, *Decentralized Finance: information frictions and public policies -Approaching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decentralized finance*, European Commission, 2022. 6.

Schwartz, Jason, “The Tax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Tax Notes Federal*, 174, Tax Notes, 2022. 2., pp. 767~795.

林賢, 「暗号資産(仮想通貨)に係る取引から生ずる所得の国内源泉所得への該当性についての考察」, 『税務大学校論叢第』, 101号, 令和2年6月, p. 175.

栗原克文, 「暗号資産をめぐる税務問題」, 『筑波ロー・ジャーナル = Tsukuba law journal』, 30号, 2021, pp. 29~73.

Kluwer International Tax Blog, <https://kluwertaxblog.com/>

MayerBrown 법무법인, <https://mayerbrown.com/en>

ゼロス監査法人, <https://zelos.co.jp/>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https://www.ifrs.org/>

딜로이트, <https://www2.deloitte.com/>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

미국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

미국재무회계위원회, <https://www.fasb.org/>

바이낸스, <https://binance.com/>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

법률사무소 GLI, <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

법률사무소 McDermott Will & Emery, <https://www.mwe.com/>
법무법인 GAV professional Group, <https://gvalaw.jp>
税理士事務所century partners, <https://www.zeitetsuzuki.jp>
아베, <https://docs.aave.com/>
암호화폐 세금계산 플랫폼 Divly, <https://divly.com/>
암호화폐 세금계산 플랫폼 Money Forward, <https://biz.moneyforward.com>
업비트, <https://m.upbitcare.com/>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영국 회계법인 Key Business Consultants, <https://www.keybusinessconsultants.co.uk>
영국회계협회, <https://www.icaew.com>
월스트리트저널, <https://www.wsj.com/>
유럽연합 법률 공식 사이트, <https://eur-lex.europa.eu/>
유럽연합 위원회 금융안정국, <https://finance.ec.europa.eu/>
유럽의회, <https://www.europarl.europa.eu/portal/en>
인베스트피아, <https://www.investopedia.com/>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https://www.jpx.co.jp>
일본 세무연구회, <https://www.zeiken.co.jp>
村上裕一公認会計士事務所, <https://ur-buddy-cpa.com>
코인게코, <https://www.coingecko.com/>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com/>
코인리, <https://koinly.io/>
코인마켓캡, <https://coinmarketcap.com/>
한경금융, <https://www.hankyung.com/economy/>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해시넷, <http://wiki.hash.kr/>
호주 국세청 커뮤니티, <https://community.ato.gov.au/>
회계법인 Deloitte 영국 사이트, <https://www2.deloitte.com/uk/en/explore/home.html>

세법연구 22-06
가상자산 및 디파이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현황

발 행 2022년 12월 30일
저 자 강동익 · 홍성희 · 박수진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미래기획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BN 979-11-6655-214-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